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940-10



2022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개요

1.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3
2. 대상 어린이집	3
3. 연혁	3
4. 2022년 사업계획	4
5. 업무체계	4

II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재지정

1.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9
2.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24

III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41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45
3. 기타	47

IV**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

1. 취소권자	51
2. 지정취소 사유	51
3. 지정취소 절차	53
4. 지정취소 된 경우의 보조금 지급	54
5. 지정취소 사후처리	55
6. 운영 포기	55

V**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1. 사업운영 관리	59
2. 컨설팅 운영 등	60
3. 보육교직원 교육	61
4. 기타 운영지원	62

VI**부록**

1.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지정 기준표	65
2.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서식	69
3. 공공형어린이집 결산양식(예시)	95
4. 정원충족률 현황	96
5. 행정지원시스템 매뉴얼	97
6.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매뉴얼	108
7. 운영비 사용매뉴얼(공무원용)	112

● 2022년 지정 및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 추진 방향

- (방향)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지방이양 취지 제고를 위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 공통 기준 및 지역별 자율 평가로 구성
 - 지역별 자율 평가의 경우 지역주민의 보육수요, 보육특수시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용 가능

□ 주요 개정내용

- 보육품질 보장 위해 전국 공통기준 설정하고, 그 외 기준은 지역특성에 맞게 변용하도록 표준안 제시
- 지정요건(필수, 지정제외) 축소, 배점항목으로 이동
 - 가. (지정) 항목 축소 (11항목 → 8항목)
 - 나. (재지정) 항목 및 배점 축소 (11항목, 25점 → 8항목, 20점)
- 배점항목(공통기준 축소, 지역별 자율 평가 확대) 개선
 - 가. 공통기준
 - (지정) 11항목, 93점 → 8항목, 67점
 - (재지정) 9항목, 68점 → 7항목, 49점

※ 지방이양 초기 사업의 유지 안정을 위해 항목 및 배점 유지
 - 나. 지역별 자율 평가
 - (지정) 3항목, 7점 → 9항목, 33점
 - (재지정) 4항목, 7점 → 9항목, 31점

※ 지자체 특성에 따라 항목 선택 및 배점 조정 가능하며, 지자체 고유의 평가항목 신설 가능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구분	현 행	개 선
지정 요건,	〈11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A등급■ 정원충족률■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 행정처분·처벌 여부(확인기간 5년)■ 공공형 취소·매도 이력■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월 임대료·융자금 상환액이 월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8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최상위등급(법령)■ (공통기준으로 이동)■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 행정처분·처벌 여부(확인기간 ±2년 가감 가능)■ 공공형 취소·매도 이력■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월 임대료·융자금 상환액이 월 보육료 수입의 5% 미만(+5% 가능)
지정 제외		

구분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이수 ■ 누리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채용 ■ 어린이집 정보공시 ■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기준으로 이동) ■ (공통기준으로 이동) ■ 어린이집 정보공시 ■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CCTV, 영상정보 열람 기준
공통 기준	<p>〈11항목, 93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소유형태(20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3점) ■ 대표자·원장 동일인 여부(5점) ■ 열린어린이집 지정(5점) ■ 연장반 운영·전담교사 채용 여부(5점) ■ 최근 6개월 급·간식비 지출(5점) ■ 1급 보육교사 비율(15점)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교사(4점) ■ 담임 보육교사 급여지급 수준(15점) ■ 원장의 전문성(학사학위, 경력 등)(6점) ■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10점) 	<p>〈8항목, 6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소유형태(15점) ■ 정원충족률(필수항목에서 이동)(17점) ■ (지역 자율 항목으로 이동) ■ 대표자·원장 동일인 여부(5점) ■ (지역 자율 항목으로 이동) ■ 연장반 운영·전담교사 채용 여부(3점) ■ 누리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채용(필수항목에서 이동)(3점) ■ (지역 자율 항목으로 이동) ■ (지역 자율 항목으로 이동) ■ (지역 자율 항목으로 이동) ■ 담임 보육교사 급여지급 수준(15점) ■ (지역 자율 항목으로 이동) ■ 원장,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이수(필수항목에서 이동)(4점) ■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5점)
지역별 자율 평가	<p>〈3항목,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1~3점) ■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1점)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3~5점) 	<p>〈9항목, 33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1점) ■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1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공통기준에서 이동)(3점) ■ 열린어린이집 지정 (공통기준에서 이동)(5점) ■ 최근 6개월 급·간식비 지출(공통기준에서 이동)(2점) ■ 1급 보육교사 비율(공통기준에서 이동)(10점)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교사(공통기준에서 이동)(4점) ■ 원장의 전문성(학사학위, 경력 등)(공통기준에서 이동)(6점)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1점)

● 2022년 지정 및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구분	현 행	개 선
필수 항목	<p>〈11항목, 2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A등급 ■ 정원충족률 ■ 행정처분·처벌 여부 ■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 월 임대료·융자금 상환액이 월 보육료 수입의 10% 미만 ■ 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 원장,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이수 ■ 누리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채용 ■ 어린이집 정보공시 ■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 열린어린이집 운영 	<p>〈8항목,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최상위등급(법령) ■ (공통기준으로 이동) ■ 행정처분·처벌 여부 ■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 월 임대료·융자금 상환액이 월 보육료 수입의 10% 미만 ■ 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 (공통기준으로 이동) ■ (공통기준으로 이동) ■ 어린이집 정보공시 ■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CCTV, 영상정보 열람 기준 ■ 열린어린이집 운영
공통 기준	<p>〈9항목, 68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3점) ■ 대표자·원장 동일인 여부(5점) ■ 연장반 운영·전담교사 채용 여부(5점) ■ 최근 6개월 급·간식비 지출(2점) ■ 1급 보육교사 비율(18점)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교사(4점) ■ 담임 보육교사 급여지급 수준(15점) ■ 원장의 전문성(학사학위, 경력 등)(6점) ■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10점) 	<p>〈7항목, 49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충족률(필수항목에서 이동)(14점) ■ (지역 자율 항목으로 이동) ■ 대표자·원장 동일인 여부(5점) ■ 연장반 운영·전담교사 채용 여부(3점) ■ 누리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채용(필수항목에서 이동)(3점) ■ (지역 자율 항목으로 이동) ■ (지역 자율 항목으로 이동) ■ (지역 자율 항목으로 이동) ■ 담임 보육교사 급여지급 수준(15점) ■ (지역 자율 항목으로 이동) ■ 원장,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이수(필수항목에서 이동)(4점) ■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5점)
지역별 자율 평가	<p>〈4항목,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1~3점) ■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1점) 	<p>〈9항목, 3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1점) ■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1점)

구분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사업 희망 참여(2점)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1~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사업 희망 참여(3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공통기준에서 이동)(3점) ■ 최근 6개월 급·간식비 지출(공통기준에서 이동)(2점) ■ 1급 보육교사 비율(공통기준에서 이동)(10점)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교사(공통기준에서 이동)(4점) ■ 원장의 전문성(학사학위, 경력 등)(공통기준에서 이동)(6점)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1점)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구분	현 행	개 선
공통 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간 동안 평가 A등급 유지 ■ 취약계층 우선보육·입소우선권 ■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 수납금지 ■ 필요경비 자자체별 수납한도액 준수 ■ 보육교사 월 급여 ≥ 국공립 1호봉 ■ 열린어린이집 필수 운영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 ■ 표준보육과정 기반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운영 ■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의무참여 ■ 정보공시 현행화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기준(건물소유형태 등) 준수 ■ 운영현황 조사 협조 ■ 반기별로 자자체에 사업실적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간 동안 평가 최상위등급 유지 ■ (시도별 운영기준으로 이동) ■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 수납금지 ■ 필요경비 자자체별 수납한도액 준수 ■ 보육교사 월 급여 ≥ 국공립 1호봉 ■ 열린어린이집 필수 운영 ■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 규정 준수(법령) ■ (시도별 운영기준으로 이동) ■ 표준보육과정 기반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운영 ■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의무참여 ■ 정보공시 현행화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기준(건물소유형태 등) 준수 ■ (시도별 운영기준으로 이동) ■ 반기별로 자자체에 사업실적 제출
시도별 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우선보육·입소우선권(공통 운영기준에서 이동)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공통 운영기준에서 이동) ■ 운영현황 조사 협조(공통 운영기준에서 이동) <p>* 시·도에서는 표준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지역별 운영기준 마련 가능</p>

2022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CHAPTER

I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개요



1.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2. 대상 어린이집
3. 연혁
4. 2022년 사업계획
5. 업무체계

2022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I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개요

1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 우수한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대상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3 연혁

연도	내용
2010~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추진 결정('10년) ○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11년) 및 본 사업 실시('12년)
2013~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및 취소권자(보건복지부→시·도지사) 변경('13년)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급 기준(정원별 차등 →현원 기준) 개편('15년) ○ 재선정 기준 제정 및 시행('11년~'12년 선정 대상, '16년)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어린이집 법령(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 3) 제정(6.8일 제정, 12.9일 시행) ○ '22년부터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지방이양 결정(8월,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4 2022년 사업계획

-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예산·물량 편성
- 「2022년도 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8호) 및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 전년도 수준의 사업물량 및 예산편성 권고
※ 상세 지정 및 운영계획은 시·도별로 수립 후 시행

5 업무체계

1)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지정·운영기준 표준안 수립
 - (재)지정 요건·운영기준 등 표준안 개발, 업무매뉴얼 제작
- 품질관리 총괄 등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관련 컨설팅 및 재무회계 교육
 -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운영관리 및 품질관리 사업 운영 지원
- 통계 관리(지정 및 재지정, 유지, 취소 현황 등)

2) 시·도

-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도별 (재)지정 요건·운영기준 개발
 -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심사 및 (재)지정(전산관리 포함)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여부 점검 진행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포기 및 취소 처리(전산관리 포함)

□ 시·도 내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및 현판 제작·배부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컨설팅, 재무회계 교육, 원장연수, 교사연수 등) 협조

3) 시·군·구

□ 시·도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 및 집행

-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요건 확인 및 지정기관 추천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급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여부 점검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포기 및 취소 사유 통보(지정서 및 현판 폐기)

□ 시·군·구 내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컨설팅, 재무회계 교육, 원장연수, 교사연수 등) 협조

2022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CHAPTER

II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재지정



1.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2.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2022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III**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재지정****1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가.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나. 2022년 지정 기준

참여 기본요건 및 지정 제외대상	세부 지정기준(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 •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 • 행정처분·처벌 이력 등 • 공공형 취소·매도 이력 •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 설치·운영, 재직 여부 • 월 임대료 및 웅자금 이자 상환액 비율 • 어린이집 정보공시 여부 •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설치기준 준수 현황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현황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현황 -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조항 위반 현황 	<p>□ 공통기준(6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소유 형태(1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 자가 전용</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15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 자가 복합</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12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 관리동 어린이집</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12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 임대 전용</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9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 임대 복합</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6점</td> </tr> </table> • 대표자 및 원장 동일한 경우(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경우</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5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0점</td> </tr> </table> • 정원충족률(17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 평균 정원충족률 80.00% 이상(농어촌 50.00% 이상)</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17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 지역별 표준면적을 적용한 정원충족률 이상~80.00% 미만(농어촌 40.00% 이상~50.00% 미만)</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12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 지역별 표준면적을 적용한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미만)</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7점</td> </tr> </table> •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3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 배치</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3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 연장반의 20% 이상~50% 미만 전담교사 배치</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2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 배치</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1점</td> </tr> </table> 	▶ 자가 전용	15점	▶ 자가 복합	12점	▶ 관리동 어린이집	12점	▶ 임대 전용	9점	▶ 임대 복합	6점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경우	5점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0점	▶ 평균 정원충족률 80.00% 이상(농어촌 50.00% 이상)	17점	▶ 지역별 표준면적을 적용한 정원충족률 이상~80.00% 미만(농어촌 40.00% 이상~50.00% 미만)	12점	▶ 지역별 표준면적을 적용한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미만)	7점	▶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 배치	3점	▶ 연장반의 20% 이상~50% 미만 전담교사 배치	2점	▶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 배치	1점
▶ 자가 전용	15점																										
▶ 자가 복합	12점																										
▶ 관리동 어린이집	12점																										
▶ 임대 전용	9점																										
▶ 임대 복합	6점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경우	5점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0점																										
▶ 평균 정원충족률 80.00% 이상(농어촌 50.00% 이상)	17점																										
▶ 지역별 표준면적을 적용한 정원충족률 이상~80.00% 미만(농어촌 40.00% 이상~50.00% 미만)	12점																										
▶ 지역별 표준면적을 적용한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미만)	7점																										
▶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 배치	3점																										
▶ 연장반의 20% 이상~50% 미만 전담교사 배치	2점																										
▶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 배치	1점																										

참여 기본요건 및 지정 제외대상	세부 지정기준(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준수여부(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채용 3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미채용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및 보육교사 모두 교육이수 4점 ▶ 원장만 보수교육 이수 2점 ▶ 보육교사만 모두 보수교육 이수 2점 ▶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수준(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구간(6단계)별 배점기준 × 최대 담임교사 수의 전체 합산한 값을 전체 담임교사 수로 나눈 값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5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50% 미만 1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미만 0점 		
□ 지역별 자율 평가(최대 3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1점 ▶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운영 여부(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경우 1점 ▶ 시간제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3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경우 5점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기준(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한 경우 2점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 미만 지출한 경우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보육교사 비율(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10점 ▶ 50% 이상~70% 미만(농어촌 30% 이상~50% 미만) 5점 ▶ 30% 이상~50% 미만(농어촌 15% 이상~30% 미만) 3점 ▶ 30% 미만(농어촌 15% 미만)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 보육교사(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이상 4점 ▶ 50% 이상~70% 미만 2점 ▶ 50% 미만 0점 		

참여 기본요건 및 지정 제외대상	세부 지정기준(100점)	
	• 원장의 전문성(6점)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1점) -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1점)	2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2점
	▶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점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1점)	
	※ 지역 여건에 따라서 총점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배점 자율 운용 가능	

1) 참여 기본요건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최상위등급 또는 2차·3차 지표 시범사업인 경우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지정 공고일 이후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가 최상위등급이 아닐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 반별 정원 탄력편성, 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등

2) 지정 제외대상

- ※ 아래 내용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외 대상 기준이며, 각 시·도별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추가할 수 있음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 시·도에 따라 처분이력 어린이집의 신청제한기간 ±2년 내 가감 가능
-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표준안)
 -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 ②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의2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용반환명령
 -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④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 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 ⑥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⑦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 ⑥, ⑦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참고

■ 행정처분 범위 중 ⑥,⑦번 관련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후('14.6) '보육료에 대한 부정행위'를 처분하기 위해 근거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존처럼 보육료에 대한 부정수급, 부정유용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 대해서만 제외 대상으로 적용

예시1 교사나 아동 허위등록, 출석일수 조작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처분 받은 경우 : 지정, 재지정 제외 및 지정취소대상

예시2 보육료나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지정, 재지정 제외 및 지정취소 대상

※ 지출증빙서류 미비, 예산과목 적용오류 등으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⑧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처분을 의미

※ 시·도에 따라 처분이력 어린이집의 신청제한기간 ±2년 내 가감 가능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행정지원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원장에 대해서만 적용

- 설치·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이자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인 어린이집

※ 시·도별 여건에 따라 +5% 가능

- 산정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6개월 평균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보육료(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월 임대료 및 응자금 이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 100

- ※ 응자금 상환액은 해당 어린이집(담보설정)에 대한 이자상환액(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원금상환은 불가)을 의미함.
월 임대료 및 응자금 이자 상환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및 운영비 외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모두 합한 액수로 산정(대출(상환)내역 제출 등)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공개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 정보공시 항목 및 공시시기 관련 기준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판단시점(구비여부):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함)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기준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 놀이터 설치기준은 지속 준수되어야 함(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심사 당일에만 이동식놀이기구를 비치하고 지정된 후 놀이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제외)

참고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대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기준

• (필수조건) 놀이터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 자체 담당자 현장확인 필수

• (놀이터 종류) 옥외, 옥내, 인근놀이터

- 옥외, 옥내놀이터 면적 기준 : $21\text{인} \times 45\% \times 3.5\text{m}^2(33.07\text{m}^2)$

※ 정원이 40~49인 어린이집에서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 아래항목을 충족한 경우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2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의 평정결과가 우수한 수준(3점)

- 3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의 1, 2문항(1-3-1, 1-3-2)에서 Y를 받은 경우

- 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 항목 2-2(실외 공간 구성)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 평가지표 항목 2-2(실외 공간 및 운영)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인증 점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공문으로 요청

- 인근놀이터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의 인정기준 증빙자료* 제출확인(2022년 보육사업안내 p.47)

-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

- * 자체에서 관리하는 공동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고정식놀이기구가 있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유효기간 내의 설치검사필증만 인정

- (자체 시스템 정보변경 절차)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전 놀이터 관련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을 완료하고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나, 자체 업무여건에 따라 수기로 신청서를 받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현장 확인 이후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하고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놀이실을 확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 활동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 허용

- 공동놀이실: 어린이집 인·허가 시 제출 자료(도면) 등으로 확인 가능(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

-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 최근 한 달 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등 어린이집 제출 자료로 확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미흡 및 영상정보 열람금지 조항을 위반한 어린이집

※ 설치·관리 및 열람금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그 밖에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3) 세부 지정기준

기준 보육교사 공통 적용기준

- 기본보육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제외)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정교사 및 특수교사는 1급 보육교사에 포함
- 출산·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1급 비율, 관련학과, 근속 보육교사 비율에 포함
- 대체교사의 경우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산정 시 포함

기) 공통 기준

- 건물 소유 형태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소유여부 : 자기 소유 시설인 경우(자가), 자기 소유 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 부부공동소유인 경우 자가로 인정
 - 이용여부 :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전용),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 공동주택(건축법 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전용으로 취급(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로 확인)
 - 배점기준 : 자가 전용(15점), 자가 복합(12점), 관리동 어린이집(12점), 임대 전용(9점), 임대 복합(6점)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여부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배점기준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경우(5점)
- 정원충족률
 - 판단기준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80.00% 이상(농어촌 50.00% 이상)인 어린이집

※ 정원충족률: 현원/정원×100

※ 농어촌 지역이란, 농어촌 지역 및 농어촌 특례 지역 모두 포함

※ 정원충족률 산정기간은 각 시·도별 보육환경을 감안하여 1년까지 확대하여 적용 가능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배점기준 : 평균 정원총족률 80.00% 이상(농어촌 50.00% 이상) (17점)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총족률 이상~80.00% 미만(농어촌 40.00% 이상 ~ 50.00% 미만) (12점)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총족률 미만(농어촌 40.00% 미만) (7점)
※ 어린이집 평균 정원총족률이 80.00%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 80.00%에서 지역 정원총족률 표준편차를 제외한 정원총족률로 적용(평균 정원총족률 및 표준편차는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p.96 참조)
- 예시 A시도의 2021년 평균 정원총족률에 대한 표준편차가 23.52라고 가정하면, $80.00\% - 23.52 = 56.48\%$ 임
 - 어린이집 평균 정원총족률 80.00% 이상(17점), 정원총족률 56.48% ~ 80.00% 미만인 경우(12점), 정원총족률 56.48% 미만(7점)

참고

-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산정 시 주의사항
 - 정·현원은 기본보육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연장보육, 야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아동 제외)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 예시 총 정원 80인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3명) 운영 시 ⇒ 정원 77명으로 간주
※ '22년 연도전환으로 인해 '22년 2월 정·현원 현황의 실제 기록과 시스템 자료가 상이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 확인하여 대체 가능

□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채용 여부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판단기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등록된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참고

- 연장반 전담교사의 범위
 - ① 신규채용 교사 ② 기본보육시간 보조교사 근무 후 연장반 전담 ③ 야간연장(시간연장) 교사로서 연장반 전담
- ※ 기본보육 담임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의 연장반 겸임은 인정 불가

- 배점기준 :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3점), 연장반의 20%이상 ~ 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2점),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또는 연장반 미운영하는 경우(1점)

□ 누리과정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채용 여부

- 판단기준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중 2/3 이상 채용한 경우 인정
- 확인방법 : 2022년 보육사업안내(P.299) '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으로 확인
- 배점기준 : 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채용한 경우(3점), 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미채용한 경우(0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 **대상 : 원장 및 보육교사**

※ 단, 보육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대체교사도 담임교사인 경우 포함)

-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기간은 유예기간으로 보며, 복직 후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토록 함
단, 육아휴직증명서와 사유서 제출

- **판단기준 : 교육 수료일이 신청일 이전이면 인정(수료증 발급 등으로 증명)**

- **배점기준 : 원장·보육교사 모두 이수한 경우(4점), 원장만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2점), 보육교사만 모두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2점), 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한 경우(0점)**

참고

- **미이수자 범위**

-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이듬해까지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예시 '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21년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9년 이후 직무교육 이수자는 '22년 말까지 보수교육 기한이 남아있으므로 별도 서류제출 없음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6개월간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월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산정

※ 출산·육아휴직의 경우, 대체교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여 산정

※ 월 지급액 :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포함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 탄력편성 수당은 미포함

※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전후 교사를 동일 교사로 간주하여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며 동 기간 중 반이 폐지 또는 증가되어 6개월간 평균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 평균을 산정

※ '22년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 보육교사 1호봉 월 2,018,400원을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

참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교사의 경우, 전일 근로 시간으로 환산하여 급여 산정**

-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받던 보육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 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가 지급 되었을 경우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지급으로 인정

- 배점기준: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구간(6단계)별 배점기준 × 담임교사 수의 전체 합산한 값을 전체 담임교사 수로 나눈 값
- 계산식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 $[(15 \times a) + (12 \times b) + (9 \times c) + (6 \times d) + (3 \times e) + (0 \times f)] / N$
※ 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해당 반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참고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201.8만원 이상	15점	a
199만원 이상~201.8만원 미만	12점	b
196만원 이상~199만원 미만	9점	c
193만원 이상~196만원 미만	6점	d
최저임금 이상~193만원 미만	3점	e
최저임금 미만	0점	f

계산식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 $[(15 \times a) + (12 \times b) + (9 \times c) + (6 \times d) + (3 \times e) + (0 \times f)] / 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해당 반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예시 담임교사가 7명인 시설의 경우 해당 반에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개월 평균
'가' 교사	201.8만원	201.8만원	201.8만원	201.8만원	201.8만원	201.8만원	2,018,000원
'나' 교사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0,000원
'다' 교사	198만원	198만원	198만원	198만원	198만원	198만원	1,980,000원
'라' 교사	195만원	195만원	195만원	195만원	195만원	195만원	1,950,000원
'마' 교사	194만원	194만원	194만원	194만원	194만원	194만원	1,940,000원
'바' 교사	192.5만원	192.5만원	192.5만원	192.5만원	192.5만원	192.5만원	1,925,000원
'사' 교사	192만원	192만원	192만원	192만원	192만원	192만원	1,920,000원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201.8만원 이상	15점	1
199만원 이상~201.8만원 미만	12점	1
196만원 이상~199만원 미만	9점	1
193만원 이상~196만원 미만	6점	2
최저임금 이상~193만원 미만	3점	2
최저임금 미만	0점	0
계		7

계산 : $[(15 \times 1) + (12 \times 1) + (9 \times 1) + (6 \times 2) + (3 \times 2) + (0 \times 0)] / 7 = 7.71$ 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계산식** 3년 이상 근속보육교사 비율 :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 100
2년 이상 근속보육교사 비율 : (2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 100
 - ※ 대체교사로 근무하다 담임교사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근속 기간에 포함
 - ※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
 - ※ (출산,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의 경우 휴직 전후의 기간을 연속한 근무 기간으로 간주 단, 퇴직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예시** '19년 3월 1일~'21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1년 3월 1일~4월 30일까지 2개월간 휴직 후 '22년 3월 31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19년 3월 1일~'22년 3월 31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간주하되, 휴직 기간은 제외하여 총 근속기간은 35개월로 산정)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배점기준**: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5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3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1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미만(0점)

나) 지역별 자율평가

참고

- **지역별 자율평가 적용 기준**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지방이양 취지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되던 세부요건 6항목을 자율 평가 항목으로 이동
 -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6개월 간 급·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1급 보육교사 비율, 영유아 관련 전문학사 학위 소지 보육교사 비율, 원장의 전문성 항목 등 6개 항목
 - 기준('21년도)의 3개 항목과 6개 이동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표준안으로 제시하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보육수요, 보육특수시책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항목 가감 및 배점 조정 가능
 - ※ 이양 초기 사업의 유지·안정을 위해 표준안으로 제시한 항목과 배점기준을 활용하여도 무방하며, 지자체 고유의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배점을 조정하는 등 총점 33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대상** : 장애아, 야간연장, 휴일보육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보육통합시스템 내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여부 확인 등)
 - ※ 단, 야간연장어린이집 등으로 지정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취약보육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음
- **배점기준**: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1점),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0점)

▣ 시간제보육 운영 여부

- 대상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시간제로 등록되어 있으며,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만 해당
 - ※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 2022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 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1개반 기준)인 경우에 해당함.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어린이집은 월 시간제 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 배점기준: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경우(1점), 시간제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0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전 3년
 - 예시** 공고일이 '22년도 5월인 경우 '19년도 5월부터 '22년도 4월까지임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포함(법인 및 법인·단체등 대표자 변경은 제외)
- 배점기준: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3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0점)

▣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 현판 또는 지정서로 지정 여부 확인
- 배점기준: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경우(5점),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0점)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여부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전 6개월
 - 예시** 공고일이 '22년도 5월인 경우, '21년도 11월부터 '22년도 4월까지임
 - ※ 판단시점 내에 연도 전환되는 경우, 각 연도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총족 여부로 판단
- 배점기준: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하는 경우(2점), 영·유아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 미만 지출하는 경우(0점)
 - ※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21년~'22년)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 ※ 지출 금액에 자자체 지원 급식·간식재료비는 미포함
- 확인방법: 최근 6개월간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금액’ 대비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기준 이상 지출 여부 확인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금액 ¹⁾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 ²⁾
최근 6개월 (영아출석평균×1,900×평균보육일수) + (유아출석평균×2,500×평균보육일수)	최근 6개월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평균액

1) '21~'22년도의 경우, 출석 아동수 적용

2) 해당 기간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에서 자자체 지원 급식·간식재료비 제외

▣ 1급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1급 보육교사 자격 인정 기준일 : 자자체에서 호봉산정, 임면보고 시 사용하는 기준일과 동일

예시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수료하고, 근무연한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1급 보육교사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자격증 신청 후 자격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신청일 전일 포함 14일 이내 교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이전 교사 기준으로 산정

- 계산식** (1급 보육교사 수)/(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1급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70.00%로 인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배점기준: 70% 이상(농어촌 50% 이상)인 경우(10점),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5점),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인 경우(3점), 30% 미만인 경우(농어촌 15% 미만)(0점)

참고

■ 보수교육 대상 및 1급 보육교사 비율 산정 방법

교사	등급	직위	비고	교사 수 산입	보수교육 대상
A	1급	만 1세반 담임	-	○	○
B	1급	만 2세반 담임	출산 휴가	○	×
C	2급	만 3세반 담임	-	○	○
D	2급	만 4세반 담임	육아 휴직	○	×
E	3급	만 5세반 담임	-	○	○
F	1급	연장보육 전담교사	-	×	×
G	2급	방과후 보육교사	-	×	×

계산식 1급 보육교사 비율 = [2명(1급 보육교사 수)/5명(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 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전문학사 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복수, 부전공 명도 해당)

- 계산식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 소지 보육교사 수) / (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해 전문 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70.00%로 인정
- 배점기준: 70% 이상인 경우(4점),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2점), 50% 미만인 경우(0점)

▣ 원장의 전문성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개월 수 및 일수 반올림 불가
- 배점기준: 3항목(각 2점 배점) 총 6점 배점(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점)
 - ①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2점),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1점)
 -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교사 경력이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2022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준용)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또는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복수, 부전공 명도 해당)
 - ②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2점)
 - 현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뿐 아니라, 종전 근무 어린이집의 원장 재직 경력도 포함
※ 유치원 원장 경력이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2022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준용)
 - ③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2점)
 - 현 어린이집에 임용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근속연수를 산정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1점)

참고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예시
 - 「다(多)가치 보육」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공보육 취약지역
 - 중소기업 밀집지역
 -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시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 건강주치의제 실시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석면검사 의무 실시대상 : 430㎡ 이상)
 - 정부 시범사업 등에 우선 참여한 어린이집 등
 - 급식·환경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지표는 예시이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추가 발굴 및 수정적용 가능

다. 지정요건 및 절차

1) 세부 지정요건

-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지정 및 지원
 - 시·군·구간 어린이집 종류 및 규모별 균형 있는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 시·도별로 지정심사단*을 구성하여 자체 지정
 - * 재지정의 경우 시도별 자체심사 가능(지정심사단 미구성 가능)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정
- 동일 점수 내 우선 지정의 원칙(표준안)
 - 1순위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비율이 해당 시·도 평균보다 낮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 행정구 포함)에 소재한 어린이집
 - *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공공형어린이집 / 전체어린이집 수) × 100
 - 2순위 :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 3순위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 4순위 : 지정권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지정절차

- 지정공고(시·도)
 - 각 시·도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신청접수(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
 -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는 시도별 지정 기준 반영 후 사용
 - 자자체별로 지정요건 부합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정요건 1차 확인(시·군·구)
 - 신청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을 1차 지정 후 시·도로 추천
 - 특히,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구비여부는 현장 확인

▣ 지정기관 추천(시·군·구)

- 시·군·구별로 정해진 물량의 1.5배~2배수 내의 어린이집을 추천, 사전에 정해진 물량 없이 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 중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추천
- 시·도로 추천 시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시·군·구별 우선순위 목록 및 신청 어린이집별 심사표 업로드

▣ 지정심사단 심사 및 지정(시·도)

- 시·도별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
- 지정 시에는 시·도별로 지정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 심의 절차 진행
- 최종 지정 시 당초 물량의 110%를 지정, 추가 10%는 예비 지정 대상자*로 관리, 다만 예비 지정 대상자는 지정자 발표 시에는 발표하지 않음

* 예비 지정 대상자 활용 : 공공형 후보로 지정된 시설이 최종심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추가공고 없이 예비 지정 대상자를 추가로 지정(예비 지정 대상자는 해당 차수에 한해 유효)
- 지정 후 해당 시·군·구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시·도의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함께 공고
- 시·도는 최종 확정된 명단을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서면보고

참고

■ 지정심사단 구성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지정심사단 대체 가능
- 지정심사단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가, 보육교사, 부모,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보육교사의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과 관계없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에서 추천
- 시·도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활용 시에도 이미 위원으로 위촉된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는 제외

▣ 지정확정(시·도)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확정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함

예시 5월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6월 중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확정된 경우는 6월 30일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확정하여 7월 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정서 및 현판 배부

- 시·도는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정서 및 현판을 발급하여 시·군·구로 배부

2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가. 대상

▣ (재)지정 4년차 공공형어린이집

- '13년, '16년, '19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호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전에 재지정여부 결정
- 미통과 할 경우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전환됨을 통지
※ 어린이집에서도 재원아동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추가보육료 발생 등)을 안내하도록 조치

나. 재지정 통과 점수(표준안)

▣ (통과 점수) 필수항목(8항목, 총 20점)을 모두 충족하고 운영항목(공통기준 7항목/지역별 자율 평가 9항목, 총 80점)은 항목별 배점 합산으로 산정

- (통과 점수) 필수항목과 운영항목의 배점 합산 결과 총점 80.0점* 이상 통과
* 시도별 지정 기관의 점수 평균 등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5점 내에서 가감 가능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검토 후 조건부 통과가능 (조건부 통과 이후 지자체에서 충족여부 확인 후 미충족 시 최소절차 진행)

예시1 필수항목 모두 충족(20점) + 운영항목(60점) = 80점(재지정 통과)

예시2 필수항목 모두 충족(20점) + 운영항목(55점) = 75점(재지정 미통과)

예시3 필수항목 1개 미충족 + 운영항목(80점) = 재지정 미통과

▣ 지자체 심사과정에서 추가요건 적용가능

※ 관련 서식 수정 또는 추가도 가능

다. 재지정 제외 대상

- ▣ 재지정 공고일 현재, 미운영 어린이집(현원 0명, 휴지 중인 어린이집 등)
- ▣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
- ▣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
※ 단, 쟁송 중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는 재지정 대상에 포함
-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의무교육 미참여, 안전공제회 미가입, 재지정 포기 어린이집

라. 2022년 재지정 기준

필수항목(8항목, 20점)	운영항목(공통 7항목/지역별 9항목, 8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 행정처분·처벌 이력 등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 설치·운영, 재직 여부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비율 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어린이집 정보공시 여부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어린이집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설치기준 준수 현황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현황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현황 -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조항 위반 현황 	<p>□ 공통기준(49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및 원장 동일한 경우(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경우 5점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0점 • 정원충족률(1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이상(농어촌 50.00% 이상) 14점 ▶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이상~지역별 평균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이상~50.00% 미만) 10점 ▶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미만) 6점 •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 배치 3점 ▶ 연장반의 20% 이상~50% 미만 전담교사 배치 2점 ▶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 배치 1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준수여부(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채용 3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미채용 0점 •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및 보육교사 모두 교육이수 4점 ▶ 원장만 보수교육 이수 2점 ▶ 보육교사만 모두 보수교육 이수 2점 ▶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 0점 • 담임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수준(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15점 ▶ 1호봉 일괄 지급 10점 ▶ 1호봉 미만 지급 0점 •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5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50% 미만 1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미만 0점 <p>□ 지역별 자율 평가(최대 3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1점 ▶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0점

필수항목(8항목, 20점)	운영항목(공통 7항목/지역별 9항목, 8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운영 여부(1점) <table border="1"> <tr> <td>▶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경우</td><td>1점</td></tr> <tr> <td>▶ 시간제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td><td>0점</td></tr> </table> 	▶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경우	1점	▶ 시간제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0점				
▶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경우	1점								
▶ 시간제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사업 희망 참여 이수 여부(3점) <table border="1"> <tr> <td>▶ 품질관리 사업 희망참여로 이수한 경우</td><td>3점</td></tr> <tr> <td>▶ 품질관리 사업 희망참여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td><td>0점</td></tr> </table> 	▶ 품질관리 사업 희망참여로 이수한 경우	3점	▶ 품질관리 사업 희망참여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0점				
▶ 품질관리 사업 희망참여로 이수한 경우	3점								
▶ 품질관리 사업 희망참여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3점) <table border="1"> <tr> <td>▶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td><td>3점</td></tr> <tr> <td>▶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td><td>0점</td></tr> </table>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3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0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3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기준(2점) <table border="1"> <tr> <td>▶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한 경우</td><td>2점</td></tr> <tr> <td>▶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 미만 지출한 경우</td><td>0점</td></tr> </table>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한 경우	2점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 미만 지출한 경우	0점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한 경우	2점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 미만 지출한 경우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보육교사 비율(10점) <table border="1"> <tr> <td>▶ 70% 이상(농어촌 50% 이상)</td><td>10점</td></tr> <tr> <td>▶ 50% 이상~70% 미만(농어촌 30% 이상~50% 미만)</td><td>5점</td></tr> <tr> <td>▶ 30% 이상~50% 미만(농어촌 15% 이상~30% 미만)</td><td>3점</td></tr> <tr> <td>▶ 30% 미만(농어촌 15% 미만)</td><td>0점</td></tr> </table> 	▶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10점	▶ 50% 이상~70% 미만(농어촌 30% 이상~50% 미만)	5점	▶ 30% 이상~50% 미만(농어촌 15% 이상~30% 미만)	3점	▶ 30% 미만(농어촌 15% 미만)	0점
▶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10점								
▶ 50% 이상~70% 미만(농어촌 30% 이상~50% 미만)	5점								
▶ 30% 이상~50% 미만(농어촌 15% 이상~30% 미만)	3점								
▶ 30% 미만(농어촌 15% 미만)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 보육교사(4점) <table border="1"> <tr> <td>▶ 70% 이상</td><td>4점</td></tr> <tr> <td>▶ 50% 이상~70% 미만</td><td>2점</td></tr> <tr> <td>▶ 50% 미만</td><td>0점</td></tr> </table> 	▶ 70% 이상	4점	▶ 50% 이상~70% 미만	2점	▶ 50% 미만	0점		
▶ 70% 이상	4점								
▶ 50% 이상~70% 미만	2점								
▶ 50% 미만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의 전문성(6점) <table border="1"> <tr> <td>▶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1점) -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1점) </td><td>2점</td></tr> <tr> <td>▶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td><td>2점</td></tr> <tr> <td>▶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td><td>2점</td></tr> <tr> <td>▶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td><td>0점</td></tr> </table>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1점) -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1점) 	2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2점	▶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점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1점) -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1점) 	2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2점								
▶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1점) <p>※ 지역 여건에 따라서 총점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배점 자율 운용 가능</p>								

1) 필수항목 세부기준

▣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

- 재지정 심사일 현재,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최상위등급,
2차·3차 지표 시범사업인 경우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에 3차 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우 85.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 심사 월에 평가 결과가 발표예정인 경우 조건부 심의 후 등급에 따라 최종결정
 - ※ 평가결과 기준미달로 인한 공공형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쟁송 중인 경우 : 해당 쟁송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라면 재지정 심사대상에 포함하되 쟁송결과가 최상위등급 미만일 경우 취소 절차 진행

▣ 공공형 지정 이후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 처벌이 진행 중인 경우는 재지정 심사대상에 포함(추후 확정된 경우 취소절차 진행)

-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

-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 ②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의2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용반환명령
-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④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 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위반으로 벌금부과
- ⑥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⑦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⑥, ⑦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⑧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2번 이상 부과 받은 경우
 - 예시** 영유아보육법 과태료 2번, 영유아보육법 과태료 1번 + 청소년성보호법 과태료 1번

참고

■ 행정처분 범위 중 ⑥, ⑦번 관련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후(‘14.6) ‘보육료에 대한 부정행위’를 처분하기 위해 근거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존처럼 보육료에 대한 부정수급, 부정유용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 대해서만 제외 대상으로 적용
- 예시1** 교사나 아동 허위등록, 출석일수 조작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처분 받은 경우 : 지정, 재지정 제외 및 지정취소대상
- 예시2** 보육료나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 지정, 재지정 제외 및 지정취소 대상
 - ※ 지출증빙서류 미비, 예산과목 적용오류 등으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최근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 자격정지)~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 ※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현재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제외 대상임
 -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공공형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
- 공공형 지정 이후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는 어린이집
-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원장에 대해서만 적용
- 최근 6개월 평균 월 임대료 및 응자금 이자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 미만인 어린이집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보육료(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산정시점 : 재지정 심사월 전월 6개월 평균
 - 계산식 (월 임대료 및 응자금 이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 100
 - ※ 응자금 상환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이자상환액(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원금상환은 불가)을 의미함.
 - 월 임대료 및 응자금 상환액은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서 지출되는 금액만을 산정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공공형 지정 이후 부모로부터 '보육료 추가수납 금지' 의무 준수여부 확인
 - ※ 공공형 지정과 동시에 시스템 상 추가보육료 생성은 제한되나,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추가수납한 정황이 2개월 이상 발견된 경우 재지정에서 제외
 - ※ 필요 시 이용아동 부모에게 확인
 - ※ 운영비 지원 관련 사항은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p.45 참조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공개한 어린이집
- 판단시점 : 재지정 심사일 현재
 - ※ 정보공시 항목 및 공시시기 관련 기준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 어린이집
- 판단시점 : 재지정 심사일 현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 어린이집
 -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 인가담당부서 협조를 통해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시정명령 이력, 조치결과 등)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함)를 설치기준을 준수한 어린이집
 - ※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기준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 인가담당부서 협조를 통해 놀이터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시정명령 이력, 조치결과 등)
 - ※ 시정명령 이력은 공공형 취소나 재지정 틀락대상은 아님. 다만, 해당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현재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
 - ※ 50인 미만 시설도 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놀이실을 확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은 허용

참고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대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기준

- (필수조건) 놀이터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 지자체 담당자 현장확인 필수
- (놀이터 종류) 옥외, 옥내, 인근놀이터
 - 옥외, 옥내놀이터 면적 기준 : $21\text{인} \times 45\% \times 3.5\text{m}^2(33.07\text{m}^2)$
 - ※ 정원이 40~49인 어린이집에서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 아래항목을 충족한 경우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음
 - 2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의 평정결과가 우수한 수준(3점)
 - 3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의 1, 2문항(1-3-1, 1-3-2)에서 Y를 받은 경우
 - 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 항목 2-2(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 평가지표 항목 2-2(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인증 점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공문으로 요청
 - 인근놀이터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의 인정기준 증빙자료 제출확인(2022년 보육사업안내 p.47)
 -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
 - * 자자체에서 관리하는 공동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고정식놀이기구가 있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
 - ※ 유효기간 내의 설치검사필증만 인정
 - (지자체 시스템 정보변경 절차)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전 놀이터 관련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을 완료하고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업무여건에 따라 수기로 신청서를 받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현장 확인 이후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하고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놀이실을 확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 활동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 허용
 - 공동놀이실: 어린이집 인·하가 시 제출 자료(도면) 등으로 확인 가능(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
 -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 최근 한 달 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등 어린이집 제출 자료로 확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 열람금지 조항을 준수한 어린이집
 - ※ 설치·관리 및 열람금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 판단시점: 재지정 심사일 기준으로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판단

2) 운영항목 세부기준

기준 보육교사 공통 적용기준

- 기본보육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제외)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정교사 및 특수교사는 1급 보육교사에 포함
- 출산·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1급 비율, 관련학과, 근속 보육교사 비율에 포함
- 대체교사의 경우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산정 시 포함

가) 공통 기준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여부

- 판단시점 : 재지정 심사일 현재
- 배점기준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경우(5점),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0점)

▣ 정원충족률

- 판단기준 : 최근 1년간* 어린이집별 정원충족률의 지역별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이상인 어린이집

* 재지정 대상으로 통보 받은 날이 속한 월의 전월부터 1년간

- 단, 농어촌 지역은 해당 어린이집의 평균 정원충족률 50.00% 이상 유지 여부로 적용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지역 : 시·도 또는 시·군·구(행정구 포함) 단위로 적용가능

- 배점기준 : 지역별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이상(농어촌 50.00% 이상) (14점)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이상 ~ 지역별 평균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이상 ~ 50.00% 미만) (10점)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미만) (6점)

※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이 지역별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별 평균 정원충족률에서 지역 정원충족률 표준편차를 제외한 정원충족률로 적용(평균 정원충족률 및 표준편자는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p.96 참조)

예시 A시도의 2021년 평균 정원충족률 78.52%, 표준편차 23.52라고 가정하면, $78.52\% - 23.52 = 55\%$ 임

-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 78.52% 이상(14점), 정원충족률 55% ~ 78.52% 미만인 경우(10점), 정원충족률 55% 미만(6점)

참고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산정 시 주의사항

- 정·현원은 기본보육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연장보육, 야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아동 제외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예시 총 정원 80인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3명) 운영 시 ⇒ 정원 77명으로 간주

※ '22년 연도전환으로 인해 '22년 2월 정·현원 현황의 실제 기록과 시스템 자료가 상이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 확인하여 대체 가능

□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채용 여부

- 판단시점 : 재지정 심사일 현재
- 판단기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등록된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참고

■ 연장반 전담교사의 범위

- ① 신규채용 교사 ② 기본보육시간 보조교사 근무 후 연장반 전담 ③ 야간연장(시간연장) 교사로서 연장반 전담
※ 기본보육 담임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의 연장반 겸임은 인정 불가

- 배점기준 :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3점), 연장반의 20% 이상~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2점),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또는 연장반 미운영하는 경우(1점)

□ 누리과정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채용 여부

- 판단기준 : 재지정 심사월 전월부터 3개월 중 2/3 이상 채용한 경우 인정
- 확인방법 : 2022년 보육사업안내(P.299) ‘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으로 확인
- 배점기준 : 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채용한 경우(3점), 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미채용한 경우(0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 대상 : 원장 및 보육교사

※ 단, 보육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대체교사도 담임교사인 경우 포함)

- 판단시점 : 재지정 심사일 현재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기간은 유예기간으로 보며, 복직 후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토록 함
단, 육아휴직증명서와 사유서 제출

- 판단기준 : 교육 수료일이 신청일 이전이면 인정(수료증 발급 등으로 증명)

- 배점기준 : 원장·보육교사 모두 이수한 경우(4점), 원장만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2점), 보육교사만 모두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2점), 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한 경우(0점)

참고

■ 미이수자 범위

-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이듬해까지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예시 '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21년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9년 이후 직무교육 이수자는 '22년 말까지 보수교육 기한이 남아있으므로 별도 서류제출 없음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 판단시점 : 공공형 지정(직전 재지정) 익월부터 심사월 전월까지 모든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 차등 지급의 경우 참여유예기간을 두어 '20년부터 확인
- 배점기준 : 국공립 1호봉 간 최소 금액 이상을 차등지급한 지급한 경우(15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이상 지급한 경우(10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미만 지급한 경우(0점)

※ 월 급여 2,035,100원(2호봉) - 2,018,400원(1호봉) = 16,700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1호봉 월급여액	1,856,000원	1,911,700원	1,940,800원	2,018,400원
차등 지급 확인	×	○	○	○
금액 기준	최소 39,600원 이상	최소 40,800원 이상	최소 35,100원 이상	최소 16,700원 이상

- ('19년) 1월부터 당해 연도 1호봉 지급

- ('20~'22년) 1월부터 당해 연도 1호봉 이상 지급하고, 보육교사 경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산·육아휴직의 경우, 대체교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 확인

※ 월 지급액('22년 기준 2,018,400원 이상) :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및 4대 보험료 중 교사 본인부담분 포함(사업자 부담분은 교사급여가 아닌 어린이집에서 부담)

※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산정은 월 지급액 기준(보육사업안내 참고)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 탄력편성 수당은 별도

참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교사의 경우, 전일 근로 시간으로 환산하여 급여 산정

-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받던 보육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 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가 지급 되었을 경우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지급으로 인정

- 어린이집에서는 공공형 지정(직전 재지정) 이후 급여지급대장, 월급명세서 등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제출
 - ※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
 -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되는 경우 재지정에서 제외

▣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재지정 심사일 현재
- 계산식** 3년 이상 근속보육교사 비율 :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 100
2년 이상 근속보육교사 비율 : (2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 100
 - ※ 대체교사로 근무하다 담임교사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근속 기간에 포함
 - ※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
 - ※ (출산,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의 경우 휴직 전후의 기간을 연속한 근무 기간으로 간주
단, 퇴직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예시** '19년 3월 1일~'21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1년 3월 1일~4월 30일까지 2개월간 휴직 후 '22년 3월 31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19년 3월 1일~'22년 3월 31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간주하되, 휴직 기간은 제외하여 총 근속기간은 35개월로 산정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배점기준: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5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3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1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미만(0점)

나) 지역별 자율 평가

참고

■ 지역별 자율평가 적용 기준

-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지방이양 취지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되던 세부요건 5항목을 자율 평가 항목으로 이동
 -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6개월 간 급·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1급 보육교사 비율, 영유아 관련 전문학사 학위 소지 보육교사 비율, 원장의 전문성 항목 등 5개 항목
- 기준('21년도)의 4개 항목과 5개 이동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표준안으로 제시하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보육수요, 보육특수시책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항목 가감 및 배점 조정 가능
 - ※ 이양 초기 사업의 유지·안정을 위해 표준안으로 제시한 항목과 배점기준을 활용하여도 무방하며, 지자체 고유의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배점을 조정하는 등 총점 31점 범위 내에서 단역적으로 운용 가능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대상 : 장애아, 야간연장, 휴일보육
- 기간 : 재지정 심사월 전월을 포함하여,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보육통합시스템 내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여부 확인 등)
 - ※ 단, 야간연장어린이집 등으로 지정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취약보육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음
- 배점기준: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1점),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0점)

□ 시간제보육 운영 여부

- 대상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 기간 : 재지정 심사월 전월을 포함하여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시간제로 등록되어 있으며,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만 해당
 - ※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 2022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 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1개반 기준)인 경우에 해당함.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어린이집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 배점기준: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경우(1점), 시간제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0점)

□ 공공형 품질관리사업 희망 참여(이수 여부)

- 대상 : 원장 및 교사
- 판단기간 : 공공형 지정(직전 재지정) 이후 3년
- 배점기준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사업 희망 참여 1회 이상 이수한 경우(3점),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 사업 희망 참여 이수하지 않은 경우(3점)
 - ※ 공공형어린이집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이수증 등으로 확인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 판단시점 : 재지정 심사월 전월 말일로부터 전 3년
 - 예시** 공고일이 '22년도 5월인 경우 '19년도 5월부터 '22년도 4월까지임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포함(법인 및 법인·단체등 대표자 변경은 제외)
- 배점기준: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3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0점)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여부

- 판단시점 : 재지정 심사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전 6개월
 - 예시** 심사일이 '22년도 5월인 경우, '21년도 11월부터 '22년도 4월까지임
 - ※ 판단시점 내에 연도 전환되는 경우, 각 연도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총족 여부로 판단

- 배점기준: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하는 경우(2점), 영·유아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 미만 지출하는 경우(0점)
 - ※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21년~'22년)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 ※ 지출 금액에 자자체 지원 급식·간식재료비는 미포함
- 확인방법: 최근 6개월간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금액' 대비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기준 이상 지출 여부 확인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금액 ¹⁾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 ²⁾
최근 6개월 (영아출석평균×1,900×평균보육일수) + (유아출석평균×2,500×평균보육일수)	최근 6개월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평균액

1) '21~'22년도의 경우, 출석 아동수 적용

2) 해당 기간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에서 자자체 지원 급식·간식재료비 제외

▣ 1급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재지정 심사일 현재

※ 1급 보육교사 자격 인정 기준일 : 자자체에서 호봉산정, 임면보고 시 사용하는 기준일과 동일

예시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수료하고, 근무연한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지 않은 경우는 1급 보육교사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자격증 신청 후 자격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재지정 심사일 포함 14일 이내 교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이전 교사 기준으로 산정

- 계산식 (1급 보육교사 수)/(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1급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70.00%로 인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

- 배점기준: 70% 이상(농어촌 50% 이상)인 경우(10점),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5점),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인 경우(3점), 30% 미만인 경우(농어촌 15% 미만)(0점)

참고

■ 보수교육 대상 및 1급 보육교사 비율 산정 방법

교사	등급	직위	비고	교사 수 산입	보수교육 대상
A	1급	만 1세반 담임	-	○	○
B	1급	만 2세반 담임	출산 휴가	○	×
C	2급	만 3세반 담임	-	○	○
D	2급	만 4세반 담임	육아 휴직	○	×
E	3급	만 5세반 담임	-	○	○
F	1급	연장보육 전담교사	-	×	×
G	2급	방과후 보육교사	-	×	×

계산식 1급 보육교사 비율 = [2명(1급 보육교사 수)/5명(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재지정 심사일 현재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 학과(전공) 또는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복수, 부전공 명도 해당)
- 계산식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 소지 보육교사 수) / (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해 전문 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70.00%로 인정
- 배점기준: 70% 이상인 경우(4점), 50%이상 70% 미만인 경우(2점), 50% 미만인 경우(0점)

▣ 원장의 전문성

- 판단시점 : 재지정 심사일 현재
 - ※ 개월 수 및 일수 반올림 불가
- 배점기준: 3항목(각 2점 배점) 총 6점 배점(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점)
 - ①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2점),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1점)
 -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교사 경력이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2022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준용)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 학과(전공) 또는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복수, 부전공 명도 해당)
 - ②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2점)
 - 현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뿐 아니라, 종전 근무 어린이집의 원장 재직 경력도 포함
 - ※ 유치원 원장 경력이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 (2022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준용)
 - ③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2점)
 - 현 어린이집 임용시점부터 현재까지 근속연수를 산정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1점)

참고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예시

-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공보육 취약지역
- 중소기업 밀집지역
-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시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 건강주치의제 실시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석면검사 의무 실시대상 : 430㎡ 이상)
- 정부 시범사업 등에 우선 참여한 어린이집 등
- 급식·환경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지표는 예시이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추가 발굴 및 수정적용 가능

2022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CHAPTER

III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3. 기타

2022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III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조건에 해당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1) 유효기간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2) 운영기준

가) 공통 기준

-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및 점수가 최상위등급,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평가 지표: 최상위등급 유지
- 제3차 평가인증 지표(통합지표) : 최상위등급 유지
- 2차 및 3차 지표 시범사업 : 90.00점 이상 유지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에 3차 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우 85.00점 이상 유지

-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부모부담 보육료를 미수납하는 대신 회계연도 중간에 필요경비를 인상하여 추가 수납 불가

-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의 지자체별 수납한도액 준수

▣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대상 : 담임교사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 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지정 후 월 급여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월 급여를 낮출 수 없음(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표 참고)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2,018,400원) 기준을 준용
 - ※ 월 지급액('22년 기준 2,018,400원 이상) :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 4대 보험료 중 교사 본인부담분 포함(단, 사업자 부담분은 교사급여가 아닌 어린이집에서 부담)
 - ※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산정은 월 지급액 기준(보육사업안내 참고)
 -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 탄력편성 수당은 별도
-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개정사항과 연동하여 지급하여, 매년 1월부터 당해 연도 지급기준 적용

▣ 열린어린이집 운영

참고

■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적보고

예시 연1회('22.3~'23.2)/ 반기('22.3~8/'22.9~'23.2)/ 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구분	세부사항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요건) 모든 보육실에 복도 창문 또는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 • 온라인 소통창구(카페, SNS, 블로그 등) 운영 • 급식·주방 공개 : 학부모에게 식단 및 급식사진(중식) 매일 온라인 공개 및 주방 상시 공개
참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1회) 부모만족도 조사, 신입원아 부모オリエン테이션 • (연2회) 부모 개별 상담, 부모교육 • (분기1회) 운영위원회, 부모참여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필수로 2회 운영하고, 나머지 2회는 급식 보조, 일일교사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 • (연중) 부모어린이집 참관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1회)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 (반기1회)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2회)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및 제24조 규정 준수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5조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 영유아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 다만, 기존에 민간보험회사 등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기입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기간의 종료 시 어린이집안 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조정 가능
 - 그 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
 -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의무 참여
 -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내용 및 주기 준수)
 -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내 정보공시 항목 및 공시시기 관련 기준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위탁기관(진흥원)에서 정보공시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항목누락 등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조치
 - 사업실적 보고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실적(열린어린이집 운영여부 포함)¹⁾을 반기별²⁾로 지자체에 6월 말까지 보고(거짓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취소)
 - 1)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서식(증빙자료 포함)으로 제출, 별지 제14호 서식은 보고용 엑셀파일 별도 배부 예정
 - 2)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22.3~8/'22.9~'23.2)
 - * 단,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보고는 제외 가능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기준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은 세부 지정기준 중 건물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지정확정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자가 → 임대, 전용 → 복합에 한함)할 경우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지정 당시의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변경사항 발생之日起부터 30일 이내, 전체 지정기준)하여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지정 시점의 통과 점수 이상³⁾일 경우에 한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유지
- * 2017년 이후 지정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시·도별 지정 당시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유지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 및 시·도(시·군·구)에서 정기적 (예시 반기별, 분기별)으로 점검

- 공공형어린이집이 아래의 경우로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유지 가능
 - 품질변동요인 :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내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 ※ 단,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지정유지를 위한 일정요건 : 지정(직전 재지정) 당시의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어린이집 지정 시점의 통과 점수 이상일 것
 - ※ 2017년 이후 지정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시·도별 지정 당시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유지
 - ※ 운영기간 및 보육교직원 근무경력에 따른 점수를 산정해야 할 경우(원장 및 보육교사 경력 등) 기준 어린이집 운영기간 및 보육교직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산정

나) 기타 시·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기준

※ 시·도에서는 아래 표준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지역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 학부모 및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야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중 1개 이상 반드시 실시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 공공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라 평일 07:30 ~ 19:30까지 운영(기본보육, 연장보육 운영), 19시30분까지 연장보육교사 배치가 원칙임. 연장보육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보육을 미운영하거나 단축 운영은 불가

주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보육교사 근로시간은 별개이며, 근로계약 시에는 근로관계법령을 기본으로 함

▣ 운영현황 조사 등 협조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현황 조사 시 서류 제출 등 협조(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지정이 취소됨)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 지급원칙

-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 산정·지급

2) 지급방식

- 전월 말일 24시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월 운영비 지급

※ 다음 각 항목은 운영비 산출을 위한 기준이며, 운영비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40만원	기본보육반 각 1개반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원 1명 이상, 담임교사가 배치된 반 기준 • 산정제외 : 장애아 방과후, 방과후, 야간연장, 새벽반, 휴일반, 시간제보육반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 : 현원 8인 이상인 반 (2·3세 혼합반 제외) • 4세 이상 : 현원 11인 이상인 반 <p>※ 단, 지급기준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현원 5인 이상인 반에 대해서는 단가의 50% 지급</p>
교육·환경 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원기준(방과후 아동 제외)

가)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 교사가 배정된 현원 1명 이상인 기본보육반 각 1개 반당 40만원 지급

※ 기본보육반이 아닌 방과후, 야간연장, 시간제 등 제외
- 겸직원장이 담임으로 있는 반, 장애아기본반^{*}도 지급대상임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전담교사 인건비도 기준대로 지급

나) 유아반 운영비

- 만 3~5세반 개소당 60만원 또는 30만원(유아 혼합반 포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반은 지원 대상 아님(부모 추가보육료 수납대상이 아님)

참고

■ 유아반 운영비 지급기준

- (만 3세반, 3~4세 혼합반) 현원 8인 이상 : 60만원, 현원 5인~7인 : 30만원
주의 2~3세 혼합반은 대상 아님
- (만 4세반, 5세반, 4~5세 혼합반) 현원 11인 이상 : 60만원, 현원 5인~10인 : 30만원
- (만 3~5세 혼합반) 현원 8인 이상 : 60만원, 현원 5인~7인 : 30만원

다) 교육·환경 개선비

- 재원아동(현원) 1인당 1.5만원(방과 후 아동은 제외)
- 주의사항: 월 운영비는 전월 말일 24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이후 아동 입·퇴소, 반 개설·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은 추가반영하지 않음
※ 즉, 해당 월 운영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다음 달 운영비 산정 시 변경된 현황이 반영됨

예시

- 아동의 입·퇴소 및 반 개설·폐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퇴소) 60만원을 지급받은 3세반에서 월 중간에 아동이 퇴소하여 기준인원(8명) 아래로 감소하여도 기 지급된 비용은 회수하지 않음
 - (입소) 현원 7명으로 30만원을 지급받은 3세반에 월 중간에 아동이 입소하여 기준인원(8명)을 넘긴 경우에는 미지급된 30만원은 추가 지급하지 않음
※ 월말 기준(말일 24시) 8명이 유지될 경우 다음 달 운영비로 60만원 지급됨

- 다만, 1일*에 반이 개설된 경우와 교사미배정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소급적용 가능
 - * ① 1일이 운영일이 아닌 경우(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 등)는 익일 적용
 - ② 1일이 공휴일이면서 금요일인 경우는 월요일까지 인정
 - ※ 1.1(금, 신정), 1.2(토) → 1.4(월) 개설된 반 소급대상으로 인정

참고

■ 소급적용 대상 및 지급절차

• 적용대상

1)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 1일에 반이 개설된 경우, 교사 미배정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중 아래 요건 충족 시 소급지원 가능
 - ① 1일에 반이 개설된 경우(교사가 배정된 현원 1명 이상인 기본보육반이어야 함)
 - ② 전월 말일 당시 교사 미배정 상태였으나 1일까지 임면보고를 실시하여 해당 월에 자체 승인이 원료된 경우
※ 임면보고 신청 시 반배정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반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2)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 1일에 반이 개설된 경우 해당반에 대한 운영비(유아반) 및 교육·환경 개선비(영아반, 유아반) 소급지원 가능(현원 산정시점은 1일 24:00)
※ 기준 운영 중인 반은 전월말일 24시 기준 현원만을 적용하며, 월 중간에 아동이 추가로 입소한 경우에도 추가지급 하지 않음(단, 아동교체로 인한 일시적인 이동은 인정 ⇒ 31일 18시 2명 퇴소 후 1일자로 동일 반에 2명 입소)

예시 소급지원 적용사례

구분	사례	추가지급액 (익월 운영비에 반영)
기준에 운영 중인 반	기준에 운영 중이던 반이 담임교사 퇴사로 신규교사 채용 후 10.1일자로 임면보고 실시 → 10월 중 승인완료	급여상승분 40만원
반 개설	신규아동 입소로 10.1일 10명으로 구성된 만 3세 유아반(기본보육반) 신설 ※ 반 신설은 교사가 배정되어야 가능	급여상승분 40만원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5만원

• 지급절차

- 소급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공문 등으로 제출(별도양식은 없음)
- 시·군·구에서는 관련사항 확인 후 익월 운영비에 반영하여 지급
※ 어린이집의 신청 없이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반영가능

3 기타

▣ 기관보육료는 계속 지급

- ▣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로서, 해당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지자체에서 정부 인건비 미지워 어린이집(민간·가정 등) 대상으로 자체 특수 시책 예산 지원 시 공공형어린이집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 가능
- ▣ 공공형어린이집의 정원을 증원 및 감원하려는 경우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보육수요와 함께 운영비 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

※ (시·군·구 변경인가 담당자) 어린이집 정원 증원 및 감원 신청이 들어온 경우 공공형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구 공공형 담당자에게 통보 → (시·군·구 공공형 담당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 지원 가능여부를 시·도 담당자와 협의한 후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안내
- 단, 당해 연도에는 정원 증원분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더라도 익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여야 함

참고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절차

- 어린이집의 보조금 신청행위는 불요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위한 신청행위를 보조금 교부 신청으로 봄
- 시·군·구에서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자동생성된 운영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승인처리
- 소관 시·군·구는 매월 특정일에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계좌로 운영비 지급
-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과목 중 323목 공공형운영비로 처리

2022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CHAPTER

IV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취소 및 운영 포기



1. 취소권자
2. 지정취소 사유
3. 지정취소 절차
4. 지정취소 된 경우의 보조금 지급
5. 지정취소 사후처리
6. 운영 포기

2022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IV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취소 및 운영 포기

1 취소권자

□ 취소권자 : 시·도지사

2 지정취소 사유

□ 평가 및 평가인증 유지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 평가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및 평가주기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인증 취소 및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 평가 지표: 최상위등급 미만
- 제3차 평가인증 지표(통합지표) : A등급 미만
- 2차 및 3차 지표 시범사업: 90.00점 미만
※ 공공형으로 운영 중에 3차 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경우 85.00점 미만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시·도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 단체, 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공공형 유지 가능

□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 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제1호부터 제3호까지) 비용 및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의2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용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척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상세내용은 II.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재지정 → 다. 제외대상 어린이집(10쪽) 참고)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원장이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공공형 지정 취소
 -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처분에 따라 평가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평가가 취소되는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 과태료는 제외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공공형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정조치 완료 후 재차 적발된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 관련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시정조치 되지 않았거나 시정조치 완료 후 재차 적발된 경우
-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설치·운영 및 재직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 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 하였으나 같은 사항을 재차 적발한 경우
-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미준수한 경우
- 입소 우선순위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학부모 및 관할 지자체 요청에도 야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를 2회 이상 거부한 경우(지정기관만 해당)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당시 제외사유 및 기본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재지정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최근 통과한 재지정 기준에 준함
- 지정 확정 이후, 건물 소유 및 이용여부, 품질변동요인 발생으로 소재지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지정 시점의 통과 점수* 미만일 경우
 - * 2017년 이후 지정의 경우, 해당 시·도별 지정 당시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공공형 지정 유지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않거나 지자체에 사업실적 허위자료 제출로 확인된 경우
- 해당 어린이집의 물리적 및 인적 환경이 동시에 변동됨으로 인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3 지정취소 절차

- 시·군·구는 지정 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
 - * 시·군·구는 행정처분(운영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등)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시,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시·도는 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는 취소 사유를 7일 이내에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처분 진행
 - ①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등 실시
 - * 어린이집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둠
 - ②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처분 실시
 - * 어린이집 제출 의견서 검토 후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처분 결정

- 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지정취소 통보를 하고 시·도(시·군·구)는 전산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관련조치 함
- 시·도는 지정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면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시·군·구는 지정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시·도에 서면보고
- 지정취소일 : 처분 확정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취소 절차 업무 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취소 사유 발생
시·군·구 ⋮	지정취소 발생 확인·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취소 사유 확인 후 시·도에 서면보고
시·도 ⋮	취소사유 확인 및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행정처분 결정 - 시·군·구를 통하여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통보 - 전산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조치 • 지정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면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시·군·구	지정서 및 현판 회수·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의 지정취소 후 결정사항을 어린이집에 통보 • 지정서, 현판 회수 폐기 서면보고 → 시·도지사

4 지정취소 된 경우의 보조금 지급

- 지정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한 운영비 환수

5 지정취소 사후처리

- 지정 취소 처분 시 시·군·구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및 협약을 회수하여 폐기
※ 지정취소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산 처리
- 공공형어린이집이 취소되거나 운영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통상적인 행정구제 절차 이행 가능

참고

- 쟁송 중 집행정지 인용, 소송 승소 등으로 인해 지정취소 후 직권복원 시 익월부터 운영비 지급
 - 해당 월에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되 익월부터는 공공형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운영 포기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포기 가능
 - 해당 어린이집은 지정취하원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는 3일 이내에 시·도에 지정취하원을 제출, 시·도는 취하원 접수 및 해당 어린이집에 지정취소 통보
 - 시·도는 지정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서면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지정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2022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CHAPTER

V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1. 사업운영 관리
2. 컨설팅 운영 등
3. 보육교직원 교육
4. 기타 운영지원

2022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보건복지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우수한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수요자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 7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사업을 위탁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재무회계 교육, 원장 및 교사연수 등 실시

■ 2022년 사업 추진 기본방향

- 지방이양 이후에도 공공형의 표준적 운영품질 담보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강화
- 기본 컨설팅 강화, 보육교직원 교육 운영 등으로 공공형 품질관리 내실화

1 사업운영 관리

1)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업무매뉴얼 관리

- (내용)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운영기준, 품질관리 사업 안내, 보육통합시스템 사용 방법 등
- (방법) 지정·운영기준 표준안 제시, 업무매뉴얼 개정 지원

2) 통계 및 사업성과 관리

- 지역별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현황 통계 실적 분석 관리

3) 지자체 담당자 교육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운영기준 표준안 교육 운영

4) 협의체 운영 및 상담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 운영기준, 품질관리 개선 간담회 등 운영
-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및 FAQ 제공 등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2 컨설팅 운영 등

▣ 목적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운영기준 및 재무회계 관리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역량 강화

▣ 내용

구분	운영기준 컨설팅	재무회계 컨설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재)지정 3년차 공공형어린이집 • (희망)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공공형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지정 2년차 공공형어린이집 • (희망)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공공형어린이집
참여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총 1,000개소 내외 • (방법) 소그룹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총 1,350개소 내외 • (방법) 1:1 및 소그룹 컨설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지정 · 운영기준 • 인사노무, 설치기준, CCTV 준수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 예·결산서/추가경정예산서 작성 등

※ 컨설팅 내용 등 추후 변동 가능

1) 컨설팅

- 운영기준 컨설팅
 - (내용)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 운영기준, 인사노무, 설치기준, CCTV 준수 여부 등
 - (방법) self-진단 후 컨설턴트가 소그룹 컨설팅 진행
- 재무회계 컨설팅
 - (내용)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안내 및 회계처리 시기별 서류 작성 방법 등
 - (방법) self-진단 후 컨설턴트가 개별(1:1) 또는 소그룹 컨설팅 진행, 회계 관리 미흡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 확인 2차 컨설팅 실시

2) 재무회계 교육

- (내용) 세입·세출 주요항목별 세부내용, 예·결산서 작성 방법 등
- (방법) 대집단 교육으로 진행

3) 정보공시 관리

- (내용)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내 7개 항목, 18개 범위(보육사업안내) 현행화 여부
- (방법) 정보공시 관리 안내, 현행화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등 개선조치

3 보육교직원 교육

▣ 목적

-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인식 함양을 통해 어린이집의 질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이 우수 보육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구분	원장연수	교사연수	특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지정 - (심화) 지정 익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공공형어린이집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지정 - (심화) 지정 익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공공형 보육교직원
참여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500명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700명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200명 내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 인식 함양 • 어린이집 운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전문성 강화 • 보육 업무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어린이집 필요 내용 중심 특강

※ 교육 내용 등 추후 변동 가능

1) 원장연수

- (내용) 공공성 함양, 운영관리 기반 확립(조직운영, 공공형의 역할) 등
- (방법) 기본과정 4개 과목(8시간), 심화과정 2개 과목(4시간) 운영

2) 교사연수

- (내용) 영유아 상호작용, 놀이 실행, 일상생활 지원 등
- (방법) 기본과정 3개 과목(6시간), 심화과정 2개 과목(4시간) 운영

3) 특강

- (내용) 운영기준, 안전, 보육과정 등 중점분야 선정, 추천대상 명시하여 대상별 전문 특강 운영
- (방법) 주제별 상하반기 총 18회 운영

4 기타 운영지원

1) 공공형어린이집 간담회 운영

- 공공형 연수과정 추진방향 및 평가, 향후 품질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

2) 공공형어린이집 효과성 분석

- 공공형 품질관리 효과성, 만족도, 지정·운영 기준 등에 대한 조사 및 결과 분석 등

CHAPTER

VI

부 록



1.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지정 기준표
2.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서식
3. 공공형어린이집 결산양식(예시)
4. 정원충족률 현황
5. 행정지원시스템 매뉴얼
6.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매뉴얼
7. 운영비 사용매뉴얼(공무원용)

2022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VI 부록

1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지정 기준표

배점 항목	지정	재지정		비고
		필수	운영	
○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등급 및 점수)	최상위등급 90점이상	최상위등급 90점이상	-	
○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	준수여부	-	-	
○ 행정처분 · 처벌 이력	준수여부	준수여부	-	
○ 공공형 취소 · 매도 이력	준수여부	-	-	
○ 원장 및 대표자 1인 1시설	준수여부	준수여부	-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비율	준수여부 (5%)	준수여부 (10%)	-	
○ 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	준수여부	-	
○ 어린이집 정보공시 여부	준수여부	준수여부	-	
○ 어린이집 설치기준 충족	준수여부	준수여부	-	
○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	준수여부		
□ 공통 기준	67점	-	49점	
○ 건물 소유형태	15점	-	-	• 지정 기준
- 자가 전용 어린이집	15점	-	-	
- 자가 복합 어린이집	12점	-	-	
- 관리동 어린이집	12점	-	-	
- 임대 전용 어린이집	9점	-	-	
- 임대 복합 어린이집	6점	-	-	
○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	5점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경우	5점	-	5점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0점	-	0점	

VI

부록

배점 항목	지정	재자정		비고
		필수	운영	
○ 정원총족률	17점	-	14점	
- (지정) 80% 이상, (재자정) 지역별 평균 이상 (농어촌) 50% 이상	17점	-	14점	
- (지정) 지역별 표준편차 적용 이상~80% 미만 (재자정) 지역별 표준편차 적용 이상~지역별 평균 미만 (농어촌) 40% 이상~50% 미만	12점	-	10점	
- (지정, 재자정) 지역별 표준편차 적용 정원총족률 미만 (농어촌) 40% 미만	7점	-	6점	
○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3점	-	3점	
-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3점	-	3점	
- 연장반의 20%이상~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2점	-	2점	
- 연장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1점	-	1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	3점	-	3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채용	3점	-	3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미채용	0점	-	0점	
○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4점	-	4점	
- 원장·보육교사 모두 이수한 경우	4점	-	4점	
- 원장만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2점	-	2점	
- 보육교사만 모두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2점	-	2점	
- 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한 경우	0점	-	0점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15점	-	15점	
-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 국공립 1호봉간 금액 이상 차등 지급	-	-	15점	• 지정은 총점 내에서 별도 배점
- 1호봉 일괄 지급	-	-	10점	
- 1호봉 미만 지급	-	-	0점	
○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5점	-	5점	
-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5점	-	5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	3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50% 미만	1점	-	1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미만	0점	-	0점	

배점 항목	지정	재지정		비고
		필수	운영	
□ 지역별 자율 평가	최대 33점	-	최대 31점	• 지역별 특수성, 자율성을 반영하여 항목 및 배점 조정 가능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장애아보육,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실시	1점	-	1점	
○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경우	1점	-	1점	
○ 시간제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0점	-	0점	
○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경우	1점	-	1점	
○ 시간제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0점	-	0점	
○ 품질관리 사업 참여(이수여부) - 품질관리 사업 희망참여로 이수한 경우	-	-	3점	
○ 품질관리 사업 희망참여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	-	0점	• 재지정기준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3점	-	3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0점	-	0점	
○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경우	5점	-	-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0점	-	-	• 지정 기준
○ 최근 6개월 간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	2점	-	2점	
○ 최근 6개월 간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미만 지출	0점	-	0점	
○ 1급 보육교사 비율 -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10점	-	10점	
○ 1급 보육교사 비율 - 50% 이상~70% 미만 (농어촌 30% 이상~50% 미만)	5점	-	5점	
○ 1급 보육교사 비율 - 30% 이상~50% 미만 (농어촌 15% 이상~30% 미만)	3점	-	3점	
○ 1급 보육교사 비율 - 30% 미만(농어촌 15% 미만)	0점	-	0점	

배점 항목	지정	재자정		비고
		필수	운영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	4점	
- 7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4점	-	4점	
- 50% 이상~70% 미만	2점	-	2점	
- 50% 미만	0점	-	0점	
○ 원장의 전문성	6점	-	6점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	2점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1점	-	1점	
•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1점	-	1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	2점	
-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2점	-	2점	
-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점	-	0점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1점	-	1점	
합 계	100점	20점	80점	

2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서식

1)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어린이집명		최초인가 일자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우편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대표자 * 인가증 제출	이름				연락처			
원장 * 경력 및 학력 증명 증빙서류 제출	이름				연락처			
	학력	<input type="checkbox"/> 대학(원)명 :		<input type="checkbox"/> 전공 :	<input type="checkbox"/> 학위 :			
	보육교사 경력		원장 경력					
정원 / 현원	<input type="checkbox"/> 정원(명)		<input type="checkbox"/> 현원(명)					
농어촌지역 * 농어촌 및 농어촌 특례 지역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input type="checkbox"/> 야간연장보육 <input type="checkbox"/> 휴일보육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보육							
건물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전용 <input type="checkbox"/> 자가 복합 <input type="checkbox"/> 임대 전용 <input type="checkbox"/> 임대 복합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관리동 내 어린이집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이용형태 전용(예 : 공동주택 내 위치한 임대 어린이집은 임대 전용 선택)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미지정							
보육교직원 현황								
※ 유의사항 - 출산·육아휴직 중인 교사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보육교사 인원에는 산정하지 말 것 * 보육교직원 경력증명 증빙서류 제출(보육교사 보수교육 수료증 및 관련학과 학력 증명 증빙서류 제출)								
총 인원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구분	이름	자격구분		현 자격 취득일자	현 어린이집 임용일자	최근 보수교육 일자	학력	
		자격증	급수				학위	전공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교사 자격증						
		특수교사 자격증						
※ 자격구분 : 동일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모두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설립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협동	
제외 대상 요건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원장포함) 관련 행정처분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일시
	어린이집 설치 기준 준수 여부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미준수	
	비상재해 대비시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놀이터	<input type="checkbox"/> 있음 (유형 : <input type="checkbox"/> 옥내 <input type="checkbox"/> 옥외 <input type="checkbox"/> 인근 <input type="checkbox"/> 기타(공동놀이실 설치 등) <input type="checkbox"/> 없음 * 공동놀이실 선택 시 어린이집 인·허가 도면, 최근 한 달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제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관리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미준수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조항 위반 현황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취소 및 포기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취소 및 포기 일자, 사유 :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원장의 타 시설 겸직 여부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 설치·운영자란 대표자를 의미함	
	정보공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시 <input type="checkbox"/> 공시하지 않음	
민원 발생 여부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비율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금액	월 보육료 수입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비율	<input type="checkbox"/>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	<input type="checkbox"/>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민원 내용	발생 일시	민원 발생 횟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참여를 신청합니다.

二〇一〇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이 취소될 수 있음

2)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체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체평가서

어린이집이 건물의 1층에 소재한 경우

어린이집형태	세부 검토 항목	충족여부
1층 (3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출입구 외의 비상용 출구(사람 출입 가능한 창문, 베란다 등)가 있음 <input type="radio"/>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이며, 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 있음 <input type="radio"/>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어린이집이 건물의 2층 이상에 소재 또는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 건물 전체 사용 시 1층에 해당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함

아래의 ①~③ 중 하나라도 충족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인정

① - 2층, 3층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피난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로 정상적으로 작동함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가 설치되어 있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예 () 아니오()
②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가 설치되어 있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예 () 아니오()
③ - 아래 어린이집 형태에 따른 세부 검토 항목을 모두 충족함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가 설치되어 있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예 () 아니오()

2 층 이 상	모두 충족	비상계단 (4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비상계단은 둘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함 <input type="radio"/>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cm 이상 <input type="radio"/>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 <input type="radio"/> 비상계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의 유효 높이는 1.5m 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피난용 미끄 럼대 (4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 <input type="radio"/> 기존(2009.7.30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input type="radio"/> 미끄럼대는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여, 층별로 각각 설치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개중 1개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직선형 미끄럼대 경우)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는 25° 이상~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 <input type="radio"/> (나선형 미끄럼대 경우)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설치함 	<input type="radio"/>

[별지 제2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체평가서

구분	총점	건물 소유 형태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정원 총족률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채용 여부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여부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담임 보육 교사급여 지급수준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지역별 지율 평가																									
배점	100점	15점	5점	17점	3점	3점	4점	15점	5점	33점																									
득점																																			
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통 기준		67점 소계																																	
건물 소유형태		15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2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2점	③ 관리동 어린이집																																
		9점	④ 임대 전용 어린이집																																
		6점	⑤ 임대 복합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정원총족률		17점	① 평균 정원총족률 80.00% 이상(농어촌 50.00% 이상)																																
		12점	②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총족률 이상~80.00% 미만 (농어촌 40.00% 이상~50.00% 미만)																																
		7점	③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총족률 미만 (농어촌 40.00% 미만)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3점	①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2점	②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1점	③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		3점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4점	① 원장·보육교사 모두 이수한 경우																																
		2점	② 원장만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2점	③ 보육교사만 모두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15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h>교사 수</th> </tr> </thead> <tbody> <tr> <td>201.8만원 이상</td> <td>15점</td> <td>a</td> </tr> <tr> <td>199만원 이상~201.8만원 미만</td> <td>12점</td> <td>b</td> </tr> <tr> <td>196만원 이상~199만원 미만</td> <td>9점</td> <td>c</td> </tr> <tr> <td>193만원 이상~196만원 미만</td> <td>6점</td> <td>d</td> </tr> <tr> <td>최저임금 이상~193만원 미만</td> <td>3점</td> <td>e</td> </tr> <tr> <td>최저임금 미만</td> <td>0점</td> <td>f</td> </tr> <tr> <td>계</td> <td>N</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점수	교사 수	201.8만원 이상	15점	a	199만원 이상~201.8만원 미만	12점	b	196만원 이상~199만원 미만	9점	c	193만원 이상~196만원 미만	6점	d	최저임금 이상~193만원 미만	3점	e	최저임금 미만	0점	f	계	N	
구분	점수	교사 수																																	
201.8만원 이상	15점	a																																	
199만원 이상~201.8만원 미만	12점	b																																	
196만원 이상~199만원 미만	9점	c																																	
193만원 이상~196만원 미만	6점	d																																	
최저임금 이상~193만원 미만	3점	e																																	
최저임금 미만	0점	f																																	
계	N																																		
* 계산식:[(15 × a)+(12 × b)+(9 × c)+(6 × d)+(3 × e)+(0 × f)]/ 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비율		5점	①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②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1점	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별지 제2호 서식]

[3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체평가서

항목	배점	평가지표	점수
지역별 자율 평가	33점	소계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1점	장애인보육,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실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1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3점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5점		
최근 6개월 간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수준	2점		
1급 보육교사 비율	10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5점	②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3점	③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① 7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2점	② 50% 이상 70% 미만	
원장의 전문성	1점	①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학위소지자	
	1점	②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③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④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1점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요건에 따라 자체평가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三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도)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기준 중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및 매도 경력 여부 등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도)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유치원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해 교육부(교육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정보의 이용 목적] 유치원 설치·운영 여부 확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항목

이름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	어린이집	직위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원장
어린이집 주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 귀하

3)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어린이집 기본정보	어린이집명		최초 인가일자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팩스번호	
	농어촌지역 <small>* 농어촌 및 농어촌 특례지역</small>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제외 대상 요건	설립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협동				
	정부지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인건비 <input type="checkbox"/> 차량운행비		<input type="checkbox"/> 교재교구비	<input type="checkbox"/> 자자체특수시책	
	어린이집 및 원장 행정처분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행정처분 일자 :)	행정 처분 내용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제3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의2호 및 제4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제4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8조 <small>* 원장에 한함</small>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법 17조, 아청법 제2조제2호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input type="checkbox"/> 없음(공고일 현재 5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원장)				
	비상재해 대비시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놀이터	<input type="checkbox"/> 있음 (유형 : <input type="checkbox"/> 옥내 <input type="checkbox"/> 옥외 <input type="checkbox"/> 인근 <input type="checkbox"/> 기타(공동놀이실 설치 등) <input type="checkbox"/> 없음 <small>* 공동놀이실의 경우 어린이집 인·허가 도면, 최근 한 달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를 통해 확인</small>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관리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미준수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조항 위반 현황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포기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취소 및 포기 일자)			취소 및 포기 사유	
	<input type="checkbox"/> 비해당(공고일 현재 3년 이내 공공형 지정 취소 및 포기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 설치 · 운영 재직 여부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small>* 설치·운영자란 대표자를 의미함</small>					

[별지 제3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제외 대상 요건	월 임대료 및 응자금 이자 상환액	보육료 수입의 <input type="checkbox"/> 5% 미만 <input type="checkbox"/> 5% 이상			
	정보공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시 <input type="checkbox"/> 공시하지 않음			
	공공형어린이집 매도경력	<input type="checkbox"/>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민원 발생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민원 내용	발생 일시	민원 발생 횟수
		<input type="checkbox"/> 없음			

구분	총점	건물 소유 형태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정원 총족률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채용여부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여부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담임보육 교사 급여 지급 수준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 교사	지역별 자율평가
배점	100점	15점	5점	17점	3점	3점	4점	15점	5점	33점
득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공통 기준	67점	소계	
건물 소유형태	15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2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2점	③ 관리동 어린이집	
	9점	④ 임대 전용 어린이집	
	6점	⑤ 임대 복합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정원총족률	17점	① 평균 정원총족률 80.00% 이상(농어촌 50.00% 이상)	
	12점	②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총족률 이상~80.00% 미만 (농어촌 40.00% 이상~50.00% 미만)	
	7점	③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총족률 미만(농어촌 40.00% 미만)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3점	①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2점	②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1점	③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	3점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4점	① 원장·보육교사 모두 이수한 경우	
	2점	② 원장만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2점	③ 보육교사만 모두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최대 15점	구분	점수	교사 수		
		201.8만원 이상	15점	a		
		199만원 이상~201.8만원 미만	12점	b		
		196만원 이상~199만원 미만	9점	c		
		193만원 이상~196만원 미만	6점	d		
		최저임금 이상~193만원 미만	3점	e		
		최저임금 미만	0점	f		
		계	N			
* 계산식:[(15 × a)+(12 × b)+(9 × c)+(6 × d)+(3× e)+(0× f)]/ 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비율	5점	①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②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1점	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지역별 자율 평가	33점	소계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1점	장애인보육,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실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1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3점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5점					
최근 6개월 간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수준	2점					
1급 보육교사 비율	10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5점	②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3점	③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① 7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2점	② 50% 이상 70% 미만				
원장의 전문성	1점	①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학위소지자				
	1점	②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③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④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1점					

4)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대상기관 자체평가서

[별지 제4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대상기관 자체평가서			
어린이집명			공공형 지정일자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농어촌지역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농어촌 및 농어촌 특례 지역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협동		
대표자	이름		연락처
원장	이름		연락처

〈 안내사항 〉

1.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통과를 위해서는 필수항목을 충족하고 운영항목 배점의 합이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다만, 일부항목의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시 '조건부 통과'를 인정하며, 이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해당항목에 표시한 후 별지 5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관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건부 통과는 시도별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대상기관 필수항목 자체평가서(모두 준수 시 20점 배점)				
번호	내용	확인결과	제출서류	
1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등급 및 점수)	<input type="checkbox"/> 최상위등급(90점 이상)	지자체확인	
2	행정처분·처벌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지자체확인	
3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 설치·운영 재직 여부 (어린이집,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지자체확인 등	
4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비중	<input type="checkbox"/> 10% 미만	관련 회계서류 (대출 상환 내역 등)	
5	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input type="checkbox"/> 준수	지자체확인	
6	어린이집 정보공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모든 항목 공시완료	지자체확인	
7	어린이집 설치기준 충족	비상재해대비시설	<input type="checkbox"/> 충족	지자체 확인
		놀이터	<input type="checkbox"/> 충족	지자체 확인 (50인 미만 시설은 증빙서류 제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input type="checkbox"/> 준수	지자체확인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조항 위반 현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지자체확인
8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input type="checkbox"/>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자체확인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대상기관 자체평가서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대상기관 운영항목 자체평가서(총 80점)				
번호	내용	배점	배점 기준	점수
공통 기준		49점	소계	
1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	
2	정원충족률	14점	① 지역별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이상 (농어촌 50.00% 이상)	
		10점	②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이상~지역별 평균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이상~50.00% 미만)	
		6점	③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미만)	
3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3점	①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2점	② 연장반의 20% ~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1점	③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4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준수여부	3점	①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채용	
		0점	②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미채용	
5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4점	① 원장 및 보육교사 모두 교육이수	
		2점	② 원장만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2점	③ 보육교사만 모두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6	임금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15점	① 경력 등에 따른 차등 지급 * 국공립 1호봉간 금액 이상 차등 지급	
		10점	② 1호봉 일괄 지급	
7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비율	5점	①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②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1점	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지역별 자율 평가		31점	소계	
1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1점	장애인보육,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실시	
2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1점		
3	품질관리 사업 희망 참여 (이수 여부)	3점		
4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3점		

[별지 제4호 서식]

[3 면]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대상기관 자체평가서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대상기관 운영항목 자체평가서(총 80점)

번호	내용	배점	배점 기준	점수
5	최근 6개월 간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수준	2점		
6	1급 보육교사 비율	10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5점	②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3점	③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7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① 7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2점	② 50% 이상 70% 미만	
8	원장의 전문성	1점	①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학위소지자	
		1점	②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③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④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9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1점		

항목	배점	평가지표 *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점수
필수항목 (조건부 통과 포함)	20점	<input type="checkbox"/> 필수항목 모두 준수 <input type="checkbox"/> 필수항목 조건부 준수(조건부 항목: 개) <input type="checkbox"/> 필수항목 미준수 (미준수 항목: 개)	
운영항목	80점		
총 점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요건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三一書院

어린이집 원장 설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도)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기준 중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및 매도 경력 여부 등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도)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유치원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해 교육부(교육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정보의 이용 목적] 유치원 설치·운영 여부 확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항목

이름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	어린이집	직위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원장
어린이집 주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 귀하

VI

제4-1

5)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이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이행계획서		
어린이집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협동	
<p>〈주의사항〉 이행을 완료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까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됩니다.</p>		
이행예정 내용	<input type="checkbox"/> <u>(시도별 해당 내용 작성 후 사용)</u>	
	<p>*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 이행기간은 재지정 유효기간 시작시점으로부터 기산 (예시: 조건부 3개월일 때, 유효기간 시작시점이 9월 1일이면 11월 30일까지 충족되어야 함)</p>	
년 월 일		
신청인 어린이집 원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6)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포기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포기신청서				
어린이집명			최초 공공형 지정일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협동			
대표자	이름		연락처	
원장	이름		연락처	
상기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재지정 심사를 희망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재지정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어린이집 원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7)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지자체 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지자체 평가서						
어린이집 기본정보	어린이집명		유형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협동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등		
	농어촌지역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농어촌 및 농어촌 특례 지역				
공공형 정보	최초 공공형 지정일자					
재지정 결과	<input type="checkbox"/> 통과 <input type="checkbox"/> 미통과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대상기관 필수항목 평가서(모두 준수 시 20점 배점)						
항목	내용	준수	미준수			
1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 (등급 및 점수)	<input type="checkbox"/> 최상위등급(9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등급 및 점수 미달			
2	행정처분·처벌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제3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의2호 및 제4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위반 벌금부과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등 과태료 2번 이상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제4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7조 * 원장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법 17조, 아동법 제2조제2호			
3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 설치·운영, 재직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미준수 - 대상자 : 원장 또는 대표자 000 - 대상시설 :			
4	임대료 및 응자금 이자 상환액 비중	<input type="checkbox"/> 10%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이상			
5	보육료 추가수납 금지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미준수			
6	어린이집 정보공시	<input type="checkbox"/> 모든 항목 공시	<input type="checkbox"/> 미공시 항목 있음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지자체 평가서

항목	내용	준수	미준수
7	어린이집 설치기준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놀이터 <input type="checkbox"/> 비상재해대비시설 <input type="checkbox"/>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input type="checkbox"/>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조항 위반 현황
8	열린어린이집 운영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미준수
확인 결과		<u> </u> 항목 준수	<u> </u> 항목 미준수
		<input type="checkbox"/> 필수항목 모두 준수(20점)	
		<input type="checkbox"/> 필수항목 중 조건부 준수(조건부 항목: 개)	
		<input type="checkbox"/> 필수항목 미준수(미준수 항목: 개)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대상기관 운영항목 평가서(총 80점)

번호	내용	배점	배점 기준	점수
	공통 기준	49점		
1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2	정원충족률	14점	① 지역별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이상 (농어촌 50.00% 이상)	
		10점	②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이상~지역별 평균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이상~50.00% 미만)	
		6점	③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미만)	
3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3점	①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2점	②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1점	③ 연장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4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준수여부	3점	①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채용	
		0점	②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미채용	
5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4점	① 원장 보육교사 모두 이수한 경우	
		2점	② 원장만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2점	③ 보육교사만 모두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6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15점	① 경력 등에 따른 차등 지급 * 국공립 1호봉간 금액 이상 차등 지급	
		10점	② 1호봉 일괄 지급	
7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비율	5점	①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②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1점	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별지 제7호 서식]

[3 면]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지자체 평가서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대상기관 운영항목 평가서(총 80점)				
번호	내용	배점	배점 기준	점수
	지역별 자율 평가	31점		
1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1점	장애인보육,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실시	
2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1점		
3	품질관리 사업 희망 참여 (이수여부)	3점		
4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3점		
5	최근 6개월 간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수준	2점		
6	1급 보육교사 비율	10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5점	②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3점	③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7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① 7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2점	② 50% 이상 70% 미만	
8	원장의 전문성	1점	①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학위소지자	
		1점	②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③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④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9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1점		
합계				

8)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별지 제8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제0000-00000호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어린이집명: 대한민국어린이집

대표자: 홍길동

주소: 경기도

유효기간: 20 . . . ~ 20 . . .

위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합니다.

0000년 00월

00시장(도지사)

VI

부록

9) 유의사항

[별지 제9호 서식]

유의사항

1. 공공형어린이집 유지를 위해서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기준은 지정이후 정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급여지급내역,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중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며 취소된 경우 향후 3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진입이 제한 됩니다.
4.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종료 이전에 재지정 심사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위를 재부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지정 심사기준은 지정당시의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정책 및 재정여건에 따라 운영비 지급방식, 지급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공공형어린이집은 모범 어린이집으로서 정부의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야 합니다.

변경사항

날짜	내용	기록자 ①

10)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별지 제10호 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어린이집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		
2. 당사자	대 표 자 성 명		여린이집 명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input checked="" type="radio"/>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정 이후 취소사유 발생 - 취소사유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input checked="" type="radio"/>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 귀 원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확정일 익월 1일부터 종료함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부서명
		주 소 (전화)	(☎)	
		전자우편		
		fax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시(도) 지사

VI

법률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게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		
2. 당사자	대표자성명		어린이집 명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행정처분서

[별지 제12호 서식]

행정처분서

1.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명 :
- 어린이집 주소 :
- 어린이집고유번호 :
- 대표자 성명 :

2. 처분 내용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귀 원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처분을 통지합니다.

- 처분제목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 처분사유 :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에 심판청구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도 선택적으로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도 지 사(시장)

VI

부록

13)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하원

[별지 제13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하원					
어린이집명		최초 인가일자		평가 및 평가인증 시 부여받은 어린이집 ID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협동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원장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 취하 사유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4)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 양식

[별지 제14호 서식]

15) 공공형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보고

[별지 제15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보고				
※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적보고 -연1회('22.3~'23.2)/반기('22.3~8/'22.9~'23.2)/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 증빙서류는 별첨				
어린이집명	시도	시군구		
지정연도	원장명	대표자명		
현원/정원	농어촌 여부	설립유형		
세부항목			유	무
1. 개방성 ◦ 공간 개방성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 급식·주방 공개 - 식단 및 급식사진(중식)을 매일 온라인 공개 - 어린이집 내 주방을 학부모 등에 상시 공개				
◦ 온라인 소통 창구 -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 운영				
2. 참여성, 자속가능성, 다양성			실시일자	내용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1회(2022.00.00)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2회(2022.00.00)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1회(2022.00.00)	
			2회(2022.00.00)	
			3회(2022.00.00)	
◦ 부모교육 - 계획안, 안내문, 실시횟수, 결과기록(활동보고서)			1회(2022.00.00)	
			2회(2022.00.00)	
◦ 부모참여 프로그램 ※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필수로 2회 운영하고, 나머지 2회는 급식 보조, 일일교사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			1회(2022.00.00)	
			2회(2022.00.00)	
			3회(2022.00.00)	
			4회(2022.00.00)	
◦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1회(2022.00.00)	
◦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반기 1회)			1회(2022.00.00)	
			2회(2022.00.00)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1회(2022.00.00)	
			2회(2022.00.00)	
◦ 부모만족도 조사(연 1회) - 만족도 조사지, 안내문, 결과지				
◦ 부모 어린이집 참관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을 보고합니다. (증빙자료 별첨)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보고는 제외 가능

3 공공형어린이집 결산양식(예시)

〈_____년 _____월 급여지급내역〉

연번	성명	담당	급여지급내역			비고
			총 급여(A)	공제금액(B)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교사 실수령액 (A-B)	
1		나무반 담임교사				
2						
3						
4						

* 월별 1장씩 작성 (지자체에서 별도 정산서식 활용 가능)

* 총 급여 기재 시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수당은 미포함 하도록 함

〈_____년 월별 임대로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구분	보육료 계(A)	세부내역				임대로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B)	비중 (B/A)*100
		기관 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	연장 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각 지역별 금액 적용시)		
1월					3세 @명 : 4세 @명 : 5세 @명 :		%
2월							
3월							
4월							

* 일년치를 하나의 표에 작성

4 정원총족률 현황

2021년 시도별 민간·가정어린이집 평균 정원총족률 현황

(2021. 1. ~ 12. 월말 기준)

구분	시도별 민간·가정어린이집 평균 정원총족률		
	평균 정원총족률(A)	표준편차(B)	(A) - (B)
부산광역시	73.72	23.88	49.84
대구광역시	67.91	25.42	42.49
인천광역시	74.21	23.53	50.68
광주광역시	67.94	24.22	43.72
대전광역시	71.02	24.76	46.26
울산광역시	72.87	24.89	47.98
세종특별자치시	71.65	24.96	46.69
경기도	75.53	23.84	51.69
강원도	72.60	24.02	48.58
충청북도	73.25	24.81	48.44
충청남도	72.06	25.37	46.69
전라북도	69.40	25.05	44.35
전라남도	73.17	23.83	49.34
경상북도	68.13	24.85	43.28
경상남도	69.87	25.14	44.73
제주도	75.70	20.71	54.99

출처: 보육통합 DW

5 행정지원시스템 매뉴얼

☞ 시스템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공고(시도 담당자)

가. 공공형 지정 사업공고 기간 설정

[행정지원시스템] → ① [어린이집운영] → ② [공공형관리] → [신청관리] → ③ [사업공고(월)] 클릭 시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공고] 팝업 생성 → ④ [추가] 클릭 → ⑤ 사업공고(월) 생성 후 [해당월]에 체크 → ⑥ [저장] 클릭
→ ⑦ [처리되었습니다] 팝업 생성 후 [확인] 클릭

No	선택	사업 공고(월)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11
2	<input type="checkbox"/>	2020.08
3	<input type="checkbox"/>	2019.03
4	<input type="checkbox"/>	2018.08
5	<input type="checkbox"/>	2017.09
6	<input type="checkbox"/>	2017.08
7	<input type="checkbox"/>	2016.05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추천(시군구 담당자)

가. 공공형 신청 어린이집 검색

[행정지원시스템] → ① [어린이집운영] → ② [공공형관리] → [신청관리]

선택	신청주체	선택내역	조치기간	학정일자	선행만료일자	정원총족률(6개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집					82.45

나. 어린이집 정보 및 자체평가서 검토

③〈신청〉탭을 선택 → ④[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사설 검색 → ⑤ 해당어린이집 [선택] 체크 → ⑥ [어린이집 상세], [보육교직원현황], [아동현황]에서 보육통합시스템 상 정보 확인 → ⑦ [첨부파일]의 파일명을 클릭하여 ⑧ [선정 신청서]를 내려 받아 내용 확인

❶ 신청관리 [P004]

※ 지난 신청건이 신청상태인 경우, 어린이집에서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택	신청일자	어린이집	조치내역	조치기간	확정일자	선정만료일자	정원총죽율(6개월)	정원총죽율(1년)	총점	첨부파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08.11	어린이집					90.83	95.42	92.00	공공형신청서(20년).hwp

다. 어린이집 평가(채점표 작성)

어린이집 상세 내용 및 자체평가서 확인 후 → ⑨ [채점표] 버튼을 클릭하여 각 영역별 점수 입력 후 저장하면 총점이 자동 합산되어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계산됨

※〈신청〉탭 조회 시 표 목록 중 〈우선순위〉는 연번이며, 채점표 작성 후 저장하면 총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총점에서 낮은 총점 순으로 변경됨

❶ 신청관리 [P004]

※ 지난 신청건이 신청상태인 경우, 어린이집에서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택	신청일자	어린이집	조치내역	조치기간	확정일자	선정만료일자	정원총죽율(6개월)	정원총죽율(1년)	총점	첨부파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08.11	어린이집					90.83	95.42	92.00	공공형신청서(20년).hwp

라. 채점표 작성

- ⑩ [채점표] 점수 채점 시 (자동생성 항목은 하위내용 점수 입력 시 자동으로 점수 산정)
 ➔ ⑪ 점수 채점표 입력 후 [저장]

● 채점표

배점항목	기준	점수 (시군구입력)
□ 공동 기준	67점	10 점 (점수입력 필요)
○ 건물소유 형태	15점	
- 자가 전용 어린이집	15점	
- 자가 복합 어린이집	12점	
- 권리통 어린이집	12점	
- 일대 전용 어린이집	9점	
- 일대 복합 어린이집	6점	
○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 정원충족률	17점	
- 80% 이상 (농어촌) 50% 이상	17점	
- 지역별 표준면적 적용 감점충족률 이상~80%미만 (농어촌) 40% 이상~50% 미만	12점	
- 지역별 표준면적 적용 감점충족률 미만, (농어촌) 40% 미만	7점	
○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3점	
- 연장반의 50%이상 전임교사를 배치한 경우	3점	
- 연장반의 20%~50%미만 전임교사를 배치한 경우	2점	
- 연장반 20%이상 전임교사를 배치한 경우(연장반 미운열 포함)	1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	3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차등	3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미채용	0점	
○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4점	
- 원장 및 보육교사 모두 보수교육 이수	4점	
- 원장이 보수교육 이수	2점	
- 보육교사 모두 보수교육을 이수	2점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최대 15점	
○ 현 어린이집 균속 보육교사	5점	
- 3년 이상 균속한 교사 50% 이상	5점	
- 2년 이상 균속한 교사 50% 이상	3점	
- 2년 이상 균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1점	
□ 지역별 자율 평가	최대 33점	10 점 (점수입력 필요)
○ 휴학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
○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	-
○ 결번어린이집 지정 여부	-	-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	-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	-	-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미만 지출	-	-
○ 1급 보육교사 비율	-	-
- 70%이상(농어촌 50%이상)	-	-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5점	
-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	-
-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	-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	-
- 70%이상	-	-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	-
- 50%이상 70% 미만	-	-
○ 원장의 전문성	-	-
- 원장이 영유아 관리학과 축산학과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	-	-
- 원장이 영유아 관리학과 축산학과 소지자	-	-
-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	-
- 원장으로서의 원 어린이집 자격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	-
- 원장으로서의 원 어린이집 자격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	-
총계	100점	10 점

11

저장

닫기

※ '1급 보육교사 비율'과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항목 평정 시 유의사항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1급 및 전문학사학위 소지' 항목의 해당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비율이 66.67%로 70.00% 미만임(교사겸직 원장 제외)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해당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70.00%로 인정하여 평정

마. 공공형 신청 어린이집 검색

- ⑫ [대표자선정취소여부]로 '대표자의 3년 이내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여부' 확인
 ➔ ⑬ 해당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선정추천] 클릭 ➔ 해당 어린이집 <선정추천> 탭으로 이동
 ➔ '선정 추천' 완료로 시도 담당자 시스템에 전달
 ➔ ⑭ 선정 반려 시 [반려] 클릭 후 사유 입력 ➔ 해당 어린이집은 <반려> 탭으로 이동

※ [반려]시 해당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신청 가능

※ 시도에서 최종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할 경우 시군구는 <최종선정>탭에서 확인할 수 있음

❸ 신청관리 [P004]

선택	신청일자	어린이집	조치내역	조치기간	확정일자	출점	우선순위	선정추천취소사유	첨부파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08.11	어린이집				92,00	1		공공형신청서(20년).hwp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추천 취소(시군구 담당자)

가. 지정추천 이후 지정추천 취소

- ① <선정추천> 탭 클릭 ➔ ② 해당 어린이집 [선택]에 체크 ➔ ③ 상단의 [선정추천취소] 클릭 후 사유 입력

❸ 신청관리 [P004]

선택	신청일자	어린이집	조치내역	정원총족률(6개월)	정원총족률(1년)	출점	우선순위	선정취소사유	첨부파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9.08.20	어린이집		86,67	88,98	67,45	1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및 평가서.pdf
<input type="checkbox"/>	2019.08.20	어린이집		89,92	93,80	48,33	2		공공형 신청서.hwp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시도 담당자)

※ 관련 행정지원시스템 입력은 매 월 말일 및 말일 전날만 가능

가. 시군구에서 지정추천된 공공형어린이집 검색

[행정지원시스템] → ① [어린이집운영] → ② [공공형관리] → [신청관리]

나. 지정추천 어린이집 정보 및 채점표 확인 후 선정

③ <선정추천> 탭에서 [검색] 클릭 후 해당 어린이집 ④ 선택 → ⑤ [어린이집상세, 보육교직원현황, 아동현황, 채점표] 확인 후 → ⑥ [선정] 클릭 → 해당 어린이집은 <선정> 탭으로 이동

※ ‘지정추천’된 어린이집은 상단의 <채점표(시군구에서 작성)>와 첨부파일(어린이집에서 작성)을 참조하여 시도별 지정계획에 따라 최종 지정

※ (예비 지정 대상 어린이집)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대기] 버튼 클릭

다. 최종 선정 명단 확인

⑦ <선정> 탭에서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 명단 확인 가능

※ 지정된 어린이집 명단은 시군구 <최종선정>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예비지정 관리)(시도 담당자)

가. 예비지정(대기) 어린이집 지정

- ① <선정추천>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② 선택 → 상단의 ③ [대기] 버튼 클릭

① 신청관리[P004]

이관이집지역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이관이집명	<input type="text"/> 전체	운영비자원기준	<input type="text"/> 전체	신청구분	<input type="text"/> 전체	
					검색				
※ 지난 신청건이 신청상태인 경우, 어린이집에서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대기 <input type="checkbox"/> 최종선정취소			사업공고(월) 선택 대기 삭제 어린이집 상세 보육교직원현황 이동현황 체점표 엑셀파일 저장						
선택	신청일자	시군구	어린이집	조치내역	조치기간	확정일자	신청만료일자	정원율	^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08.14		·어린이집						

②

나. 예비지정 어린이집 지정 방법

- ④ <대기>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⑤ 선택 → 상단의 ⑥ [선행] 버튼 클릭

① 신청관리 [P004]

▶ 아린이집지역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 운영비지원기준	<input type="button" value="전체"/>	▶ 신청구분	<input type="button" value="전체"/>
▶ 아린이집명	<input type="button" value="전체"/>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 지난 신청건이 신청상태인 경우, 아린이집에서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택	신청일자	시군구	아린이집	조치내역		조치기간	확정일자	선정만료일자	정원총수
				사업공고(월)	선정				
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08.14	▶아린이집						

2)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평가(시군구 담당)

가. 공공형 재지정 대상 및 신청 확인

- 2차 재지정 대상 확인

재신청 관리에서 ① [획정] → ② [신청일] 또는 ③ [유효기간]을 오른차순으로 정렬하여 재지정 어려이 있는 확인

① **제신청관리 [P005]**

여린이집지역		▼	▼	검색							
※ 본인 업무 외 환경 조희금지,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 개인정보 이용 후 반드시 파기 처리 수칙 준수											
신청	평가판단	확정	미신청								
No	<input type="checkbox"/> 선택	상태	여린이집	시군구	행정동	대표자	원장	공공현설정일자	③ 유효기간▲	신청서 ②	신청일
1	<input type="checkbox"/>	최종확인	여린이집	2017.10.31	2020.10.31	<input type="checkbox"/> 확인	2020.04.20
2	<input type="checkbox"/>	최종확인	여린이집	2017.10.31	2020.10.31	<input type="checkbox"/> 확인	2020.04.23
3	<input type="checkbox"/>	최종확인	여린이집	2017.10.31	2020.10.31	<input type="checkbox"/> 확인	2020.04.23
4	<input type="checkbox"/>	최종확인	여린이집	2017.10.31	2020.10.31	<input type="checkbox"/> 확인	2020.04.23
5	<input type="checkbox"/>	최종확인	여린이집	2017.10.31	2020.10.31	<input type="checkbox"/> 확인	2020.04.23
6	<input type="checkbox"/>	최종확인	여린이집	2017.10.31	2020.10.31	<input type="checkbox"/> 확인	2020.04.23
7	<input type="checkbox"/>	최종확인	여린이집	2017.10.31	2020.10.31	<input type="checkbox"/> 확인	2020.04.24

- 1차 재지정 대상 확인(매년 1차 재지정 어린이집 명단 자동 업데이트)

④ [미신청] 탑에 나타난 어린이집은 해당년도 재지정 진행 대상임

① 제신청관리 [P005]

• 어린이집지역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 본인 업무 외 화면 조회 금지,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 개인정보 이용 후 반드시 파기 처리 수칙 준수												
신청	평가완료	확정	내선정									
No	<input type="checkbox"/> 선택	상태	어린이집	시군구	행정동	대표자	원장	공공협선정일자	유효기간	신청서	신청일	등록
1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어린이집					2018.09.28	2020.09.30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2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어린이집					2018.09.28	2020.09.30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 재지정 신청 및 신청서 확인(별도 신청 기간 설정 없음)

⑥ [신청] 탭 → ⑦ [선택] → ⑧ 신청서 클릭 → ⑨ 신청서 파일명 클릭 후 신청서 확인

⑥	제신경 관리[P005]									
· 어린이집지역 [] [] [] 경계 ※ 본인 업무 외 화면 조회 금지,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 개인정보 이용 후 반드시 파기 처리 수칙 준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종가집료 <input type="checkbox"/> 확정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No	선택	설명	어린이집	시군구	행정동	마포자	원장	공공형선정일자	유효기간	선택상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	어린이집					2017.10.31	2020.10.31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⑧ 신형일 등기일 2020.08.26										
										

나. 공공형 재지정 신청 어린이집 평가

- 필수항목 평가 등록

- ① [신청] → ② [선택] 목록 중 해당어린이집 체크 → ③ [재선정평가] 클릭 시 [재선정 평가지] 팝업창 생성
 → ④ 필수항목 평가 후 [필수항목 결과]에 [○준수 ○준수(조건부) ○미준수] 중 해당란에 체크

The screenshot displays the 'Facility Evaluation' (재선정 평가)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search bar with dropdown menus for 'Facility Type' and 'Facility Name'. Below the search bar is a table showing facility information, with row 1 selected. A checkmark is present in the 'Selected' column for this row.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Facility Evaluation Form' (Facility Evaluation Form). It contains a table with 8 row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evaluation item. The first row has a note: '※ 2차지표 : 90점 이상 / 3차지표 : 85점 이상 / 통합지표 : A등급'. The last row is a summary: '필수항목 결과' (Required Item Result), with three checkboxes for '○준수' (Compliant), '○준수(조건부)' (Compliant (Conditional)), and '○미준수' (Non-compliant).

Annotations with numbers 1 through 4 are overlaid on the interface:

- 1: Points to the 'Selected' checkbox in the facility list table.
- 2: Points to the title 'Facility Evaluation' at the top of the main form.
- 3: Points to the 'Facility Evaluation' button in the top right corner of the main form.
- 4: Points to the 'Required Item Result' section at the bottom of the main form.

- 운영항목 평가 등록

필수항목 이 준수, 조건부 준수일 경우 운영항목 문항 생성 → ⑤ 해당 항목별 점수 입력 → ⑥ 최종 점수 확인
→ ⑦ [저장] 클릭 → 재선정 평가지 등록 후 → ⑧ 〈평가완료〉 탭으로 이동

네점항목	기본	점수(시군구입력)
□ 공통 기준	49점	[]점
○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점
○ 정원총족률	14점	[]점
- 지역별 평균 이상, (농어촌) 50% 이상	14점	[]점
- 지역별 표준편차 적용 정원총족률 미만, (농어촌) 40% 이상~50% 미만	10점	[]점
- 지역별 표준편차 적용 정원총족률 미만, (농어촌) 40% 미만	6점	[]점
○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여부	3점	[]점
-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3점	[]점
- 연장반의 20%~50%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2점	[]점
- 연장반 20%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연장반 미운영 포함)	1점	[]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	3점	[]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채용	3점	[]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미채용	0점	[]점
○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4점	[]점
- 원장이 보수교육 이수	4점	[]점
- 보육교사 모두 보수교육 이수	2점	[]점
○ 담임 보육교사급여 지급 수준	15점	[]점
- 경력에 따른 차등지급(국공립 1호통간)	15점	[]점
- 1호통 일괄지급	10점	[]점
○ 현 어린이집 균속 보육교사	5점	[]점
- 3년 이상 균속한 교사 50% 이상	5점	[]점
- 2년 이상 균속한 교사 50% 이상	3점	[]점
- 2년 이상 균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1점	[]점
□ 지역별 자율 평가	최대31점	[]점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
○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
○ 품질관리 사업 혁명 참여 이수 여부	-	-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	-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	-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	-	-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미만 지출	-	-
○ 1급 보육교사 비율	-	-
-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	-
-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	-
-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	-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	-
- 70% 이상	-	-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	-
- 50% 이상 70% 미만	-	-
○ 원장의 전문성	-	-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	-	-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	-
-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	-
-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	-
-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	-
운영항목 총계	80점	[]점 (자동계산)

6 최종결과	필수항목	20	<input type="radio"/> 통과 <input checked="" type="radio"/> 조건부통과 (기한: 20210401) [] <input type="radio"/> 미통과 (사유: [])
	운영항목	80	<input checked="" type="radio"/> 통과 <input type="radio"/> 조건부통과 (기한: []) [] <input type="radio"/> 미통과 (사유: [])
	합계	100	<input type="radio"/> 통과 <input checked="" type="radio"/> 조건부통과 (기한: 20210402) [] <input type="radio"/> 미통과 (사유: [])

7 [저장] [?]

□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확정(시도 담당)

※ 관련 행정지원시스템 입력은 매 월 말일 및 말일 전날만 가능

가. 공공형 재지정 신청 어린이집 목록 및 신청서 확인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 → [재신청관리] → ① <평가완료> 탭에서 어린이집 검색 → ② 해당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③ <재선정평가> 클릭하여 시군구에서 작성한 평가내용 확인 → ④ [신청서] 목록의 [확인]을 클릭하여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재선정 신청서 내려 받기 가능 → ⑤ 해당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확정] 버튼 클릭 시 <확정> 탭으로 이동

① 재신청관리[P005]

No	선택	상태	어린이집	시군구	행정동	대표자	원장	공공형선정일자	유효기간	신청서	제선정평가	확정	엑셀파일 저장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요청	어린이집					2017.10.31	2020.10.31	④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2	
2	<input type="checkbox"/>	확인요청	:					2017.10.31	2020.10.31	④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2	

나. 공공형 재지정 확정 목록 확인

⑥ <확정> 탭에서 어린이집 검색 → ⑦ 해당어린이집 통과여부 및 총점 등 확인

① 재신청관리[P005]

No	선택	상태	어린이집	시군구	행정동	대표자	원장	공공형선정일자	유효기간	신청서	신청일	평가일	통과여부	필수합격 조건부 기한	운영합격 조건부 기한	출점	
1	<input type="checkbox"/>	최종확인	어린이집					2018.08.31	2021.09.30	④	2018.06.27	2018.08.31	⑦	통과			76

□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신청내역 반려(시군구 담당자)

① <신청> 탭에서 어린이집 검색 → ② 해당어린이집 선택 → ③ 상단의 [반려] 버튼 클릭 → 반려완료

① 재신청관리[P005]

No	선택	상태	어린이집	행정동	대표자	원장	공공형선정일자	유효기간	신청서	신청일	평가일	제선정평가	반려	엑셀파일 저장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	어린이집					2017.10.31	2020.10.31	③	2020.08.26					

3)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취소 및 포기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 관련 행정지원시스템 입력은 매 월 말일 및 말일 전날만 가능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 → [신청관리] → ① [선정] 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② [선정취소] 클릭 → 최종선정 취소사유 입력 팝업창에서 ③ 취소일자 입력 → ④ 취소유형 선택 → ⑤ 저장

- 최종지정 이후 아래의 사유로 취소 시 취소날짜로부터 3년간 공공형어린이집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신청관리 [PSMS101010]

The screenshot shows the '신청관리' (Application Management) screen with the following details:

- Filter Options:** '어린이집 지역' (Childcare Center Region), '전체' (All); '운영비지원기준' (Operating Cost Support Criterion), '전체'; '신청구분' (Application Category), '전체'.
- List View:** Shows a table with columns: 선택 (Selected), 신청일자 (Application Date), 대기 (Waiting), 최종선정취소 (Final Selection Cancellation). It lists three entries:
 - 선택: checked, 신청일자: 2013.04.16, 대기: 2019.05.01, 최종선정취소: 어린이집
 - 선택: unchecked, 신청일자: 2013.04.17, 대기: 2019.05.01, 최종선정취소: 어린이집
 - 선택: unchecked, 신청일자: 2015.08.17, 대기: 2018.09.01, 최종선정취소: 어린이집
- Buttons:** 사업공고(월), 대기, 신청취소 (highlighted in red), 어린이집 상세, 보육교직원현황, 아동현황, 제2점포, 엑셀파일 저장.
- Message:** ※ 지난 신청건이 신청상태인 경우, 어린이집에서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 Pop-up Window:** '최종선정취소사유' (Reason for Final Selection Cancellation) window.
 - ③ 취소일자:** Date input field.
 - ④ 취소유형:** Radio buttons for reasons:
 - 평가 및 평가기관을 유치 중 다음과 같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 평가가 성과위 등급(0등급) 조정 및 평가주기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기준 하락 및 유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 평가 기준 A등급 미안
 - 제33) 평가기준 자료(통합표) : 사용금 미안
 - 25) 및 35) 카드 사용사례: 90,000원 미안<-공공으로 운영 중에 3차 카드 사용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및 경우 05,000원 미안)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내용 및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및 제42에 따른 내용반환명령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장치 또는 품성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와 함께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도록을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도록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당시 제3자로 사유 및 기본요건 미준수 사실이 발생한 경우
 - ⑤ 저장:** Save button.

6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매뉴얼

☞ 시스템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신청

□ 설치운영관리 접속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① 어린이집운영 → ② 공공형어린이집관리 → 공공형 선정관리



공공형 선정관리 하단의 ③ [신규신청]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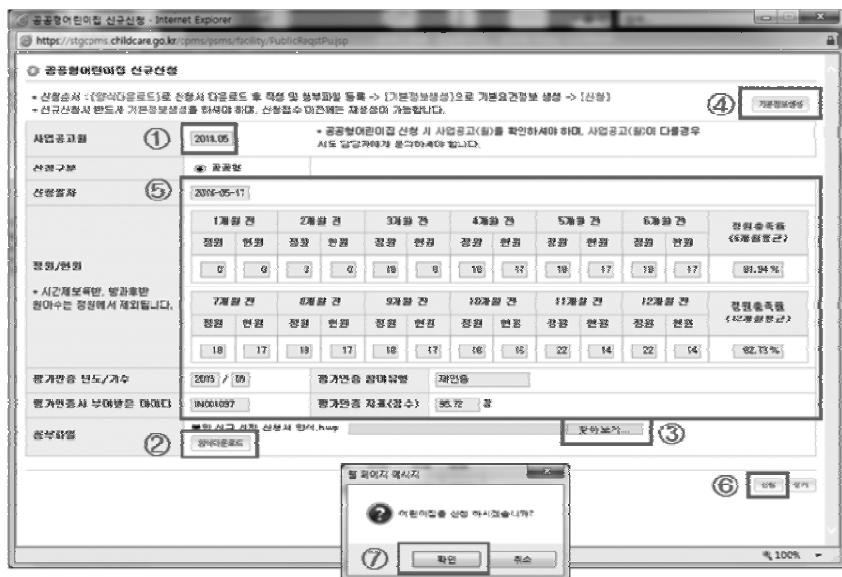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정보			
선정구분	<input type="radio"/> 선정 <input checked="" type="radio"/> 재선정	선정상태	
선정상태별 사용			
선규선정일자		선정취소일자	
선정반려일자			
재선정선정일자		재선정포기일자	
재선정반려일자			

③

[신규신청] [신정취소] [선정취소] [재선정(선정/포기)]

□ 공공형 신규 신청서 작성

[신규신청]버튼 클릭 후 팝업창 생성 → ① 사업공고월 확인(해당월 여부) → ② [양식다운로드] 클릭 후 신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한글파일) → 파일 저장 후 상세내용 수기 입력 → ③ [찾아보기] 클릭 후 작성한 첨부파일 첨부 → ④ 신청서 첨부 후 기본정보 생성 클릭 시 ⑤번 란에 기본정보 자동 생성 → '신청일자', '정원/현원', '평가년도/기수', '평가 시 부여받은 아이디' 내용 확인 → ⑥ [신청]버튼 클릭 → ⑦ 확인



※ ⑤ 문항들은 ④[기본정보생성] 클릭 시 자동 생성 되는 항목이므로, 어린이집에서 수정할 수 없음

□ 공공형 신규 신청 확인

신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공공형선정] 메뉴에서 신청 상태 확인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정보

① [신청상태]에서 '신청'여부 확인 → ② [신규신청일자]에서 '신청일자' 확인

① 공공형 선정관리[C228]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제외 대상		선행이력조회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정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정보			
신청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신청 <input type="radio"/> 제신청	신청상태	① 신청
신청상태별 사용			
신규신청일자	2010.05.17	신청회소일자	
신청변경일자			
제신청신청일자		제신청포기일자	
제신청변경일자			
<input type="button" value="신청상태"/> <input type="button" value="신청취소"/> <input <input="" type="button" value="제신청신청(포기)" }=""/>			

2)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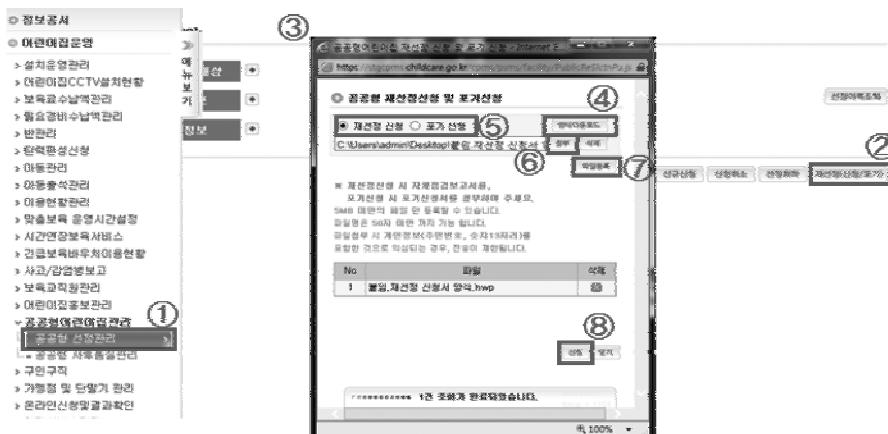
□ 공공형어린이집관리 접속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① 어린이집운영 → ② 공공형어린이집관리 → 공공형 선정관리 클릭



□ 재지정신청서(또는 포기신청서) 제출

- ① [공공형 선정관리] → ② [재선정(신청/포기)] 클릭 → ③ [공공형 재선정신청 및 포기신청] 팝업창 → ④ [양식다운로드] 클릭, 다운 받은 파일 양식에 맞게 신청서(또는 포기신청서) 작성 후 PC에 저장 → ⑤ [재선정 신청] 또는 [포기 신청] 선택 → ⑥ [첨부] 클릭 후 [재선정신청서] 또는 [포기신청서] 파일 업로드 → ⑦ [파일등록] → ⑧ 첨부파일 확인 후(삭제 가능) [신청] 클릭 → 신청완료



▣ 재지정 신청 또는 포기 신청 확인

- ① [공공형 선정관리] → ②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정보] 클릭 → ③ 재신청 시 [신청상태] '신청' 확인 → ④ 포기 신청 시 [재선정포기일자] 확인

- 최종 공공형 포기 이후 포기 신청 날짜로부터 3년간 공공형어린이집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① 공공형 선정관리 [C220]
메뉴보기
②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정보
③ 신청상태
④ 재선정포기일자

신청구분	<input type="radio"/> 신청 <input checked="" type="radio"/> 재선정	신청상태	신청
신청상태별 사용			
신규신청일자	2015.08.10	신청취소일자	
신청변경일자	2015.08.11		
재선정신청일자	2018.05.15	재선정포기일자	
재선정변경일자			

VI

부록

7 운영비 사용매뉴얼(공무원용)

1) 공공형운영비 생성 및 승인 방법

행정지원시스템 → 보조금 → 지급승인 → 공공형운영비(신) 탭 선택

① 운영비 생성을 원하는 어린이집 선택(✓)

● 지급승인

No	■ 전체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명	어린이집 명	운영비지원구분					교사수	금액	인원			
				현원	3세반		4세반							
					8인이상	5인이상	11인이상	5인이상						
1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104	2	0	2	0	10	7,460,000			
2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49	1	0	1	0	6	4,035,000			
3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24	1	0	0	0	4	2,360,000			
4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30	1	0	0	0	5	2,800,000			
5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0	0	0	0	0	0	0			
6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0	0	0	0	0	0	0			
7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0	0	0	0	0	0	0			

② ‘공공형운영비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운영비 생성

● 지급승인

No	■ 전체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명	어린이집 명	운영비지원구분					교사수	금액	인원			
				현원	3세반		4세반							
					8인이상	5인이상	11인이상	5인이상						
1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104	2	0	2	0	10	7,460,000			
2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49	1	0	1	0	6	4,035,000			
3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24	1	0	0	0	4	2,360,000			
4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30	1	0	0	0	5	2,800,000			
5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0	0	0	0	0	0	0			
6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0	0	0	0	0	0	0			
7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0	0	0	0	0	0	0			
8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0	0	0	0	0	0	0			
9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0	0	0	0	0	0	0			
10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0	0	0	0	0	0	0			

?
공공형 운영비를 계산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② 지급승인

작업년월 [2015 09] > 어린이집유형 [전체] > 어린이집지역 [대전광역시] > 검색 조건 [어린이집] > 검색

선행 승인 반려 미신청 공공형운영비 품종형운영비(선)					운영비지원구분						
No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명	현원	3세반		4세반		교사수	금액	승인일	
				8인미상	5인미상	11인미상	5인미상				
1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49	1	0	1	0	6	4,035,000		
2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24	1	0	0	0	4	2,360,000		
3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30	1	0	0	0	5	2,800,000		
4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104	2	0	2	0	10	7,460,000		
5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31	1	0	0	0	4	2,465,000		
6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0	0	0	0	0	0	0		
7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0	0	0	0	0	0	0		
8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0	0	0	0	0	0	0		
9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0	0	0	0	0	0	0		
10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0	0	0	0	0	0	0		

경고 메시지의 대시지

처리되었습니다.

확인 취소

③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승인버튼 클릭하여 승인처리

④ 지급승인

작업년월 [2015 09] > 어린이집유형 [전체] > 어린이집지역 [대전광역시] > 중구 > 검색 조건 [어린이집] > 검색

선행 승인 반려 미신청 공공형운영비 품종형운영비(선)					운영비지원구분						
No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명	현원	3세반		4세반		교사수	금액	승인일	
				8인미상	5인미상	11인미상	5인미상				
1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	0	1	0	6	5,235,000			
2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1	0	0	0	4	2,360,000	2015.09.17		
3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1	0	0	0	5	2,800,000			
4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2	0	2	0	10	7,460,000			
5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1	0	0	0	4	2,465,000	2015.09.17		
6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0	0	0	0	0	0			
7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0	0	0	0	0	0			
8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어린이집	0	0	0	0	0	0			
9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0	0	0	0	0	0			
10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0	0	0	0	0	0			

경고 메시지의 대시지

공공형 운영비를 승인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2) 공공형운영비(신) 생성내역 수정 방법

① 수정을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값 변경

● 지금승인

작업년월 [2015] [09] > 어린이집유형 [-전체-] > 어린이집지역 [] []
 > 검색조건 [어린이집] [] [검색]

No	□ 전체 어린이집 여유율	어린이집 여률성	어린이집명	운영비지원구분					교사수	금액	인원	
				3세반		4세반						
				8인이상	5인이상	11인이상	5인이상					
1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1이집	49	3	0	1	0	6	4,635,000	
2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1집	24	1	0	0	0	4	2,360,000	201
3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1집	30	1	0	0	0	5	2,800,000	
4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1이집	104	2	0	2	0	10	7,460,000	

② 값을 변경한 어린이집을 선택()후, 저장버튼 클릭하여 수정완료

● 지금승인

작업년월 [2015] [09] > 어린이집유형 [-전체-] > 어린이집지역 [] []
 > 검색조건 [어린이집] [] [검색]

No	□ 전체 어린이집 여유율	어린이집 여률성	어린이집명	운영비지원구분					교사수	금액	인원
				3세반		4세반					
				8인이상	5인이상	11인이상	5인이상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49	3	0	1	0	6	4,635,000	
2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24	1	0	0	0	4	2,360,000	201
3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30	1	0	0	0	5	2,800,000	
4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104	2	0	2	0	10	7,460,000	
5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31	1	0	0	0			
6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1이집	0	0	0	0			
7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1이집	0	0	0	0			
8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1이집	0	0	0	0			
9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1집	0	0	0	0			
10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1이집	0	0	0	0			

경고 메시지의 대시지

공공형 운영비를 수정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 지금승인

작업년월 [2015] [09] > 어린이집유형 [-전체-] > 어린이집지역 [] []
 > 검색조건 [어린이집] [] [검색]

No	□ 전체 어린이집 여유율	어린이집 여률성	어린이집명	운영비지원구분					교사수	금액	인원
				3세반		4세반					
				8인이상	5인이상	11인이상	5인이상				
1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49	3	0	1	0	6	5,235,000	
2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24	1	0	0	0	4	2,360,000	201
3	<input type="checkbox"/>	민간	일반	30	1	0	0	0	5	2,800,000	
4	<input type="checkbox"/>	민간	시간연장형	104	2	0	2	0	10	7,460,000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2022년 3월 인쇄

2022년 3월 발행

발행인 보건복지부장관

발행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타워 B 12층

〈비매품〉

본 간행물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